

연구결과보고서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 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Study on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risk communication system for  
agri-food

식품정보코리아(주)

2006. 11

농림부

# 제 출 문

농림부 귀하

본 보고서를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 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식품정보코리아(주)/오원택)”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24

주관연구기관명 : 식품정보코리아(주)

주관연구책임자 : 오 원 택

참여연구원 : 김 정 민

정 혜 정

권 오 건

오 창 환

강 문 희

서 은 경



# 제 목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	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3.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	11
제2장 연구결과 .....	12
제1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요 .....	12
1.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RA) .....	12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13
제2절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51
1. 국내 현황 .....	51
2. 국외 현황 .....	79
3. 국내 현황 문제점 .....	118
제3장 결론 .....	122
제1절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122
1. 체계 구축의 목적 설정 및 필요성 인식 .....	122
2. 전담조직 신설 .....	123
3. 전문인력 양성 .....	128
4. 정보관리 .....	129

제2절.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작성 .....	133
1.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	133
2. 청소년 대상 농식품 등 안전 식생활 가이드 작성 .....	135
 참고문헌 .....	 136
 부    록 .....	 141

## 표 차 례

<표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단 .....	29
<표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효과 평가 .....	43
<표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 .....	49
<표 4> 후생노동성 2005년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운영계획과 실시계획 .....	93
<표 5> 수입식품 안전대책 관련 의견교환회 참가 후 인식변화 .....	101
<표 6> 잔류농약 등 positive list제도 관련 의견교환회 참가 후 인식변화 .....	101
<표 7>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현황 비교 .....	119

## 그림 차례

<그림 1>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12
<그림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분류 .....	21
<그림 3>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53
<그림 4>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	54
<그림 5>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55
<그림 6>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	56
<그림 7>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	56
<그림 8>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57
<그림 9>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58
<그림 10>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8 .....	58
<그림 11> KFDA,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평가 사례 .....	60
<그림 11>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63
<그림 12>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	63
<그림 13>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64
<그림 14>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	65
<그림 15>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	66
<그림 16>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66
<그림 17>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67
<그림 18>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68
<그림 19>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8 .....	69
<그림 20> 농림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9 .....	69

<그림 21>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72
<그림 22>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	73
<그림 23>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74
<그림 24>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	74
<그림 25>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	75
<그림 26>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76
<그림 27>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76
<그림 28>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86
<그림 29>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	87
<그림 30>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88
<그림 31> 일본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96
<그림 32> 일본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	98
<그림 33> 일본 농림수산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103
<그림 34> 일본 농림수산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	104
<그림 35> EU의 RASFF 정보전달 흐름도 .....	111
<그림 36> EU의 RASFF Weekly Overview Archive .....	111
<그림 37> 영국의 RASFF 체계 .....	112





## 연구결과 보고서 요약문

<b>연구과제명</b>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Study on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risk communication system for agri-food		
<b>중심단어</b>	식품,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food, agricultural food, risk, communication, risk communication		
<b>주관연구기관</b>	식품정보코리아(주)	<b>주관연구책임자</b>	오 원 택
<b>연구기간</b>	2006. 5.26 ~ 2006.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인체 위해가능물질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 발달과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및 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외식산업의 발달, 가공식품 이용 증가로 인하여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광우병 및 조류독감 발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도 소비자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li> <li>○ 식품안전관련 행정기관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효율적 식품안전관리, 강력한 소비자·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덱스(CODEX)와 같은 국제기구나 미국등에서 과학적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을 도입·정착하여야 함. 또한 위험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교류를 근간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와 관계자의 의견교환,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 등 이른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li> <li>○ 본 연구에서는 국내(식약청, 농림부, 환경부)·국외(미국, 일본, EU) 식품 및 비식품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및 제도, 매뉴얼, 관련 정보 등을 문헌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 정리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비교 분석, 그 개념을 정립함.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농식품 위험정보의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역할 정립 등 효율적인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li> <li>○ 또한, 기존에 작성된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 농식품 등 안전 식생활 가이드”를 작성함.</li> <li>○ 본 연구결과는 농림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용 기초 자료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농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효율적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이해 증진, 농식품관련 유해물질 정보의 공유 및 농식품 안전분야 지식정보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li> </ul>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 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제1장

## 연구 개요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가. 식생활 안전 보장을 위한 리스크 분석 필요성 대두

-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인체 위해가능물질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 발달과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및 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외식산업의 발달, 가공식품 이용 증가로 인하여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광우병 및 조류독감 발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도 소비자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해외여행자의 증가는 물론 세계 무역의 자유화 즉, 식품의 수출·입 확대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위해식품이나 식품유해물질이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하므로 그 피해범위와 심각성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임. 특히 식품의 원재료와 농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WTO 체제 발족으로 식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정책, 법규, 기준 및 규격, 제도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적 근거, 투명성과 국제적 조화를 중시함으로써 식품안전 당국의 업무를 더 가중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료 농·임·축·수산물의 수입 또는 보관·제조·가공·유통·조리 과정 후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최근 국내에서 GAP, GHP, SSOP(PP), HACCP 적용과 더불어 식품 위해에 대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인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과 생산이력제(Traceability)가 강조되고 있음.
- 효율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3가지 요소로 구성된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해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느 정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용 대 효과나 기술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규제 등의 조치를 결정, 실시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임.
-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업계, 학계 등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리스크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임.
- 최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푸드체인(Food Chain)에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절차, 조직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를 주제로 이해당사자간의 양방향(two way)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므로 관계자가 한 장소에 모여 실시하는 의견교환회, 새로운 규제의 설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의견청취(소위 public comment)가 적절한 예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전달과 같이 단방향(one way)은 광의에서 보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예로 볼 수 있음

- 의견교환회
- public comment
-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 전달
- 정부 발표 자료 등에 의한 정보제공
-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
- 기타

## 나. 리스크 분석을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관련 행정기관은 글로벌화 추세 및 WTO 체제하에서 또한 강력한 소비자·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덱스(CODEX)와 같은 국제기구나 미국 등에서 과학적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을 도입·정착하여야 함.
- 그러나 리스크 분석의 3가지 요소 중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위험정보 수집 및 교류(활용)도 미흡한 실정임.
- 농식품 등의 위험정보 수집 및 교류는 지난 3월24일 신설·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의2(위해평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에 관련된 리스크 평가는 물론 식품안전 정책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은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 및 제외국의 정보 및 위해물질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확산·공유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식품안전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효과적인 대처로 제한된 자원을 시기적절하게 집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인터넷 사용자 급증 등으로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확산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관련 행정 기관 뿐만 아니라 업체, 소비자의 식품사고를 예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켜 보다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농식품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줌.
- 그러나 식품안전관련 위험정보의 수집체계와 교류(공유)가 미흡하여 실질적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태임. 또한 식품안전 관련 통합정보망 구축 수준이 아직 미흡하여 위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개별 기관별 식품위험정보망을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통합정보망으로 확대 구축이 더 시급함.
- 또한 이들 위험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교류를 근간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의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이른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의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 다양한 위험정보교류에 의한 국민건강 확보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The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사이트를 통해 분유제품에서의 Enterobacter Sakazakii 문제 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미국 FDA의 FDA Information for Consumers, 미국 CDC의 Foodborne Diseases Active Surveillance Network (FOODNET), 미국의 식품안전 포털사이트 [www.foodsafety.gov](http://www.foodsafety.gov), 일본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안전정보부)의 “식품안전정보”,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안전정보”, 호주 FSANZ의 “Food Safety Newsletter” 등과 같이 주요 선진외국은 안전정보의 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를 비롯한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정보” 사이트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이슈성 정보제공 및 긴급공지를 위해 국제기구, 외국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음. 또한 관계자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기 간담회, 강연회, 의견교환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네덜란드에서 독일, 벨기에로 수출한 동물용 감자 사료에서 다이옥신 오염이 발견되고 이를 사용한 농장의 원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 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04년 11월 5일자로 네덜란드·벨기에·독일에서 제조한 돼지고기 및 유가공품관련 잠정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신속한 식품위험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일례임. 보건복지부 역시 ‘05년 1월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여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 농식품 사고, 농식품 유해물질 정보와 같은 안전정보의 확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함.  
→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 농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 농식품을 수입 또는 사용하



려는 영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음.

- '04년 일본 식품과학정보센터(Japan Food Information Center)가 지역 보건소, 소비생활센터직원,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식품안전정보의 전달과 관련하여 응답자 70% 이상이 “식품안전정보의 정확한 전달요구”를 답변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소비자 등이 알기 쉬우면서 정확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요구되고 있음.
- 이처럼 식품안전관리에서 올바른 정보 수집·제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근 몇 년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기법으로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 정부의 신뢰성·권위 확보나 대국민 서비스 척도를 가름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국민 정보나 자료의 내용이나 제공 방법·기법이 국민의 요구나 세계적 조류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그러므로 국내·외 농식품 위험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실태 등을 조사하고, 소비자를 위한 위험정보 제공 및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둠.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 (1) 국내·외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조사

-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사례, 제도, 매뉴얼, 관련 정보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조사, 정리함.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관련 타 부처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li> <li>- 비식품 관련 타 부처 : 환경부</li> </ul> </li> <li>○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 USDA, FDA 등</li> <li>-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li> <li>- 영국 : 식품안전청</li> </ul> </li> </ul>
------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2) 효과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p>기존 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홍보사업 등의 비교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현재 구축되어 있는 농식품관련 정보시스템의 비교분석</li> <li>○ 상기 기관의 웹 사이트 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관련 메뉴 및 내용 비교분석</li> <li>○ 최근 3년 홍보 사업,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의 비교 분석</li> </ul>
<p>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 및 방법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비교 분석 및 개념 정립</li> <li>○ 국내 현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상 등을 고려한 방법 정립</li> </ul>
<p>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달성할 목표를 설정</li> </ul>
<p>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자 및 수혜자 요구 조사</li> <li>○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른 원칙 수립</li> </ul>
<p>위해정보 관리방법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 관리 방법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수집</li> <li>- 수집 정보의 등급 분류 기준 설정</li> <li>- 수집 정보의 평가</li> </ul> </li> </ul>
<p>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방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관계자 역할 정립</li> <l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구성 및 역할 정립</li> <l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가이드라인 도출</li> </ul>
<p>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개선점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식품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개선</li> </ul>

(3)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작성

-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 최신 정보의 수집
  -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위해정보 추가
  
- 청소년 대상의 농식품 안전 매뉴얼 작성
  - “청소년”이라는 대상 특성에 맞춘 매뉴얼 작성
  - 중금속, 잔류농약, 위해미생물 등 농식품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및 기본적 예방 수칙 등을 제공.

나. 연구방법

<p>요구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의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조사 : 방문조사</li> <li>○ 기초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전략 수립 : 요구조사 및 기초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목표, 방향, 추진방법 등을 조정</li> </ul>
<p>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 등 조사 : 전문서적, 연구보고서, 인터넷 등을 조사하여 국내 및 해외 농식품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조사</li> </ul>
<p>효율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식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홍보사업 등의 비교 분석 : 웹 조사, 문헌조사, 방문조사</li> <l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 및 방법 정립 : 문헌 조사, 전문가 검토</li> <l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 및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자 요구조사 : 농림부(소비자안전과) 요구조사</li> <li>- 문헌조사를 통한 원칙 및 목표 수립</li> <li>- 관계자 검토 및 전문가 자문</li> </ul> </li> <li>○ 위험정보관리방법 및 위험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조사</li> <li>- 관리방법 및 시스템 구축(안) 작성</li> <li>- 관계자 검토, 전문가 및 자문위원 자문</li> </ul> </li> <li>○ 기존 정보시스템 연계, 개선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조사 및 문제점 도출</li> <li>- 개선방안 도출</li> </ul> </li> </ul>
<p>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작성된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용 기초교재”의 분석</li> <li>○ 최신 위해정보 조사</li> <li>○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li> <li>○ 청소년용 농식품 유해물질 도출 및 그룹핑</li> <li>○ 청소년용 위해정보 구성 및 형태 도출</li> <li>○ 유해물질별 위해정보 작성</li> <li>○ 전문가 검토</li> </ul>

### 3.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 가. 기대효과

- 효과적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 농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효율적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이해 증진
-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식품관련 유해물질 정보 공유 및 식품안전 분야 지식정보화 기여
- 농식품 안전성관련 소모적, 비생산적 논란이나 혼동 예방
- 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감소
-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제고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나. 활용방안

- 보도자료 작성 원칙 수립, 식품사고 긴급대책 마련, 식품안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
- 농식품 유해물질관련 보도자료 등의 과학성, 객관성 향상
-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해물질 인터넷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 구축, 식품안전관리 백서, 유해물질관련 참고자료, 식품안전관련 정보 시스템·콘텐츠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유해물질 관련 각종 교육·홍보용 자료로 활용
- 농림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용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식품 risk communication 시스템 구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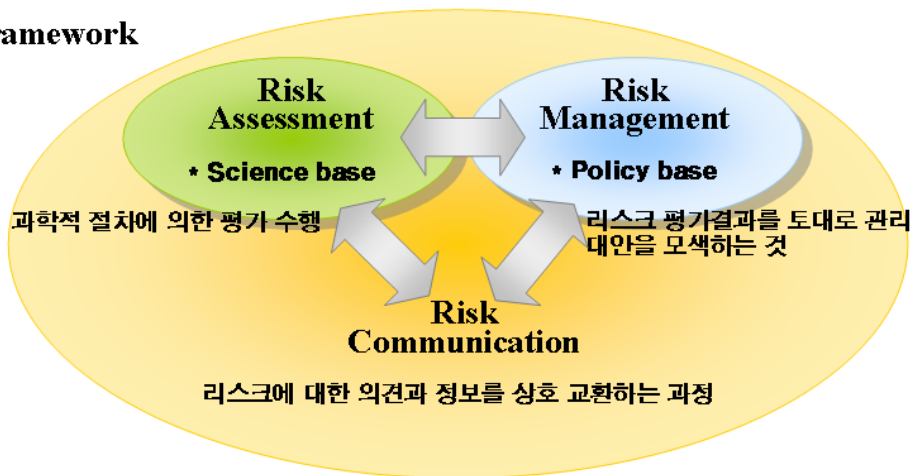
<b>제2장</b>	<b>연구 결과</b>
------------	--------------

### 제1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요

#### 1.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RA)

- 농·임·축·수산물 등의 수입 또는 보관·제조·가공·유통·조리 과정 후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식품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최근 국내에서는 GAP, GHP, SSOP(PP), HACCP 적용과 더불어 식품 위해에 대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인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과 생산이력제(Traceability)가 강조되고 있음.
- 리스크(risk)는 독성(toxicity)과 발생빈도(exposure)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며 어떤 물질이 인간에게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위해요소(hazard)에 노출되었을 경우 유해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위해발생확률, 위해종류, 위해의 강도’ 세 가지 특징적 지표로 수반함. 효율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 분석은 다음 그림과 같이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3가지 요소로 구성됨.

**Framework**



<그림 1>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①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 유해 물질에 대한 위해요소 확인, 위해요소 결정, 노출평가, 리스크 결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함.
- 과학적 기초가 되는 프로세스로 다음의 단계로 구성됨
  -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 위해요소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②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유해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개발, 비교, 분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③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 유해에 대한 리스크 정보를 전달, 교육 및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임.

##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가. 정의

(1) 리스크의 정의

-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위해요소(hazards)와 리스크(risk)에 대하여 CODEX에서는 hazards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닌 식품 중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물질·요인 또는 식품중의 상태를 말함”으로 정의하며, risk란 “식품 중에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생기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확률과 그 정도의 함수”로 정의함.

CODEX 정의
<b>Hazard</b> – A biological, chemical or physical agent in, or condition of, food with the potential to cause an adverse health effect.
<b>Risk</b> – A function of the probability of an adverse health effect and the severity of that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

(2)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 커뮤니케이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임. 신(神)이 자신의 덕(德)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열(熱)이 어떤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로 전해지는 따위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분여(分與)·전도(傳導)·전위(轉位) 등을 뜻하는 말이지만, 근래에는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쓰임.
-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정의된 것을 살펴보면 “정보를 전달하고 반응을 끌어내는 것” “정보·관념·태도를 공유하는 것” “일련의 규칙에 따라 행동의 여러 요소나 생활의 여러 양식을 공유하는 것” “정신이 서로 통하는 것,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한다는 것” “정보·관념·태도를 전달하는 행위” “어떤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주로 상징(symbol)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 “메시지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하게 제시됨.
- 金川智惠은 커뮤니케이션은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크라이시스(crisis)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분류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 위험성 회피로의 태도변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후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을 전달하는 재해 관리(management)의 일환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실에서 발생한 재해, 즉 사실에 기초를 둔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대상이 갖는 위험성과 장해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수준이면 수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관계자가 함께 고려하여 합의형태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

##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 식약청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리스크 분석절차에서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업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간 식품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
- 식품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미한 상태로 천석조의 “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2004)”과 농촌진흥청의 “농산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위험정보교환 이론과 실제” 등이 대표적 연구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하여 연구가 진행되면서 변모하고 있음. 예전에는 정보의 일방적 제공,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보 등에 기초한 설득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재는 관계자 사이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유리한 정보, 불리한 정보 포함)를 교환·공유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 리스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협력하여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Committee on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개인,

그룹, 기관사이의 상호적인 과정”라고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위험 요인 및 위해 메시지에 대한 우려, 의견, 반응과 위해 관리를 위한 입법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이 포함됨.

- 1998년 2월 로마에서 ‘식품규격 및 안전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 전달의 적용’이라는 의제로 FAO/WHO 합동 전문가 회의를 개최, 이 회의에서 ‘위험정보 전달’은 식품에 발생한 위해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비전문가에게로 또는 전문가간에 정확하고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함.
- 또한 CODEX 일반원칙부회 2003년도 보고서를 참고하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분석의 전 과정을 통한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사업자, 학계 이외 관심을 지닌 사람 사이의 리스크에 관련된 요인, 리스크의 파악 방법에 대해서 정보, 의견의 양방향 교환. 리스크 평가결과와 리스크 관리조치의 기본적인 생각의 설명을 포함한다고 정의함.

#### CODEX 정의

**Risk Communication** : The intera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concerning risk and risk management among risk assessors, risk managers, consum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 OECAD는 화학물질 위해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이해당사자간에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미국 EPA는 “개인, 집단, 조직 간에 위해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상호 교환과정”으로, 일본 환경성은 “화학물질의 환경위해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공무원, 사업자, 국민, 시민단체 등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상호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함.
- 2003년도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①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의 정도, ②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의 의의와 의미, ③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의 관리와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결정사항, 행동계획 및 방침 등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함. 한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C)은 사회가 어떻게 위해성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사회 전체가 수용 가능한 위해성 관리정책과 방향을 결정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함.

- 또한 보통은 위험정보전달이라 함은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즉, 정보를 통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것이 위험정보전달이라고 정의함.
- 그 외 식품 및 비 식품분야(예 : 환경 등 화학물질)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인, 집단, 조직간의 정보 및 의견 상호교환 프로세스  
리스크 특성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와 관심, 견해의 표명, 또는 리스크 메시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인 결정에의 반응 등을 포함함(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진을 위한 제언, National Research Council(1989), 1997)
  - 개인, 기관, 집단사이의 정보와 의견 교환의 상호작용적 과정  
리스크 성질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리스크 메시지)와 엄밀하게는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닌 리스크 메시지에 대한 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대한 관심, 의견 및 반응을 표현하는 메시지 2종류의 메시지를 포함함 (리스크와 함께하는 위험한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吉川肇子, 2000).
  - 관계자가 상호간에 정보를 요구, 제공,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하여 관계자 전체가 문제와 행위에 대하여 이해와 신뢰의 수준을 높여 리스크 삭감에 도움이 되는 것 (일본화학회 화학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법 검토위원회, 1999).
  - 행정과 전문 과학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국민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측면과 국민이 리스크에 관한 정도 높은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하는 2가지 측면이 있음 (유전자제조합식품의 리스크, 三瀬勝利, 2001).
  - 제공자의 상황 좋은 정보만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마이너스

면도 포함하여 정보 공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법. BSE 대책 수법으로서 주목됨. 특히 식품안전에 대해서 제로 리스크는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대책과 사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됨. 생산이력의 개시 등도 그 한 가지 (일본 전국농업신문 HP, 2003.05.02).

-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은 일반적으로 리스크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소비자, 생산자, 업계, 학계 등 모든 관련자와 상호 교환 즉 양방향(two way) 교환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4)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 JUN SEKIZAWA는 “화학물질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정보개시(開示), 설명책임 (accountability) : 정보가 청구되어서 하는 정보개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는 다름. 설명책임은 결과뿐만 아니라 경과 설명과 또한 어떠한 책임을 갖는 설명인가를 명확하게 하여야만 함.
  - 정보공개, 정보제공 : 어느 법률에서 무엇이 규제되는가, 어느 관공서에서 무엇을 담당 하는가 등의 안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제야 겨우 시작했다는 예도 있지만 상대와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정해진 것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은 홍보에 지나지 않음.
  - 정보교환 : 정보교환은 동업자들 사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짐. 정보를 귀하게 여겨 정보수집만을 위하여 회의에 참가 한다는 사례도 있음.
  - 커뮤니케이션과 의견교환 : 의견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중심이 되기도 함. 입장과 사고방식이 다름을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임.

#### 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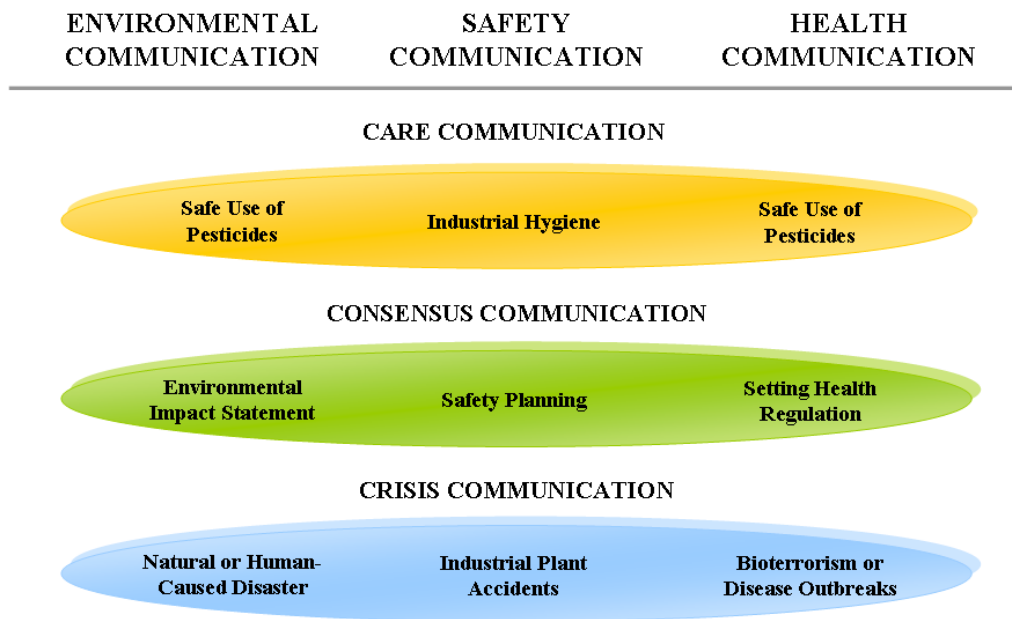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과제”(2004년)에 의하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의 과정에 있어 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계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관계자는 각각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알기 쉽게, 정확하게” 공유하면서 각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함. 이 경우 “도망치지 않기, 숨기지 않기, 거짓말 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 식품의 리스크와 그 저감조치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가 서로 이야기하여 공통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고 각각의 책무, 역할에 따라 참가하여 공헌함.
- 천석조의 “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2004)”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과정에서 고려되어지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데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
  - 제안되거나 수행된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완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
  -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의 효과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
  - 리스크 관리의 방법으로 선택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에 기여.
  - 안전한 식품 공급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
  - 리스크 관리의 방법으로 선택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에 기여.
  - 안전한 식품 공급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
  - 모든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 존중 의식을 강화하는 것.
  - 리스크 정보 전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집단들의 적절한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

- 것.
- 관련 집단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해인자의 지식·태도·가치·방법·인지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김광진이 정의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Introduction to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위해분석교육교재, 2005).
    - 목적 그룹들 사이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 개선
    -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개
    - 리스크 감소 판단기준과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국민 보호 강화
    - 긴급 상황 시 가이드 제공
    - 리스크 관련 논쟁을 중재하는데 도움을 줌.
    - 리스크 분석 절차에서 진실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관리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
  - 즉,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리스크 분석을 위한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의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계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분류

- 전상일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 및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주제에 따른 분류
  - 환경 관련 커뮤니케이션
  -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 건강 관련 커뮤니케이션
- 기능에 따른 분류
  - Care Communication :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

- 예) 흡연은 폐암을 유발 한다.
- Consensus Communication : 과학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의 내용에 대하여 진행
  - 예) MSG(monosodium glutamate)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 Crisis Communication



<그림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분류

### 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3 요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김광진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Message), 메신저(Messenger), 미디어(Media) 등 3M으로 설명함(Introduction to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위해분석교육교재, 2005).
  - Message (What to say)
  - Messenger (Who to say it)
  - Media (How it should be presented)

#### (1) Message

① 메시지 설계를 위한 일반 규칙(General Layout Rules)

- 언어적, 비언어적(시각적) 메시지 제공
- 기술적 사실과 정보만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피함
- 설득력 있고, 제3의 원인에 의한 영향 인정
- 구조적, 체계적 메시지 제공
- 3개의 Key 메시지로 정보제한
- Key 메시지 반복
- 간결한 메시지

→ 청중들이 듣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화하기 위함.

② 설계 모델 (Layout Models) : 일반 대중들의 생활환경, 관심분야 및 교육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자 설계 모델 (Layout Model) 적용.

- TTT Model : 이 모델은 전달자의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임.

TTT Model
<p><b>Tell them what you are going to tell them</b> -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아라.(Capture the audience's attention)</p> <p><b>Tell them</b>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Provide supporting evidence)</p> <p><b>Tell them what you told them</b> -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마무리를 하라.(Use an effective and strong closing)</p>

③ 메시지 전달 시 시간분배

-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발표, 질의응답 및 상호의견교류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적절함.
  - 발표시간 : 20분



- 질의응답 : 2분
- 상호의견교류 : 3분

④ 메시지 설계 및 전달 시 주의사항

-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부정적 단어의 사용은 피하여야 함.
  - 5 N's : No, Not, Never, Nothing, None
  - Contamination/Contaminant, Pollution/Pollutant, Toxic,
  - Dangerous, Concern
-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및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약어의 사용은 피하여야 할 사항임.

(2) Messenger

- 대중들은 전달자(messenger)의 진실과 신뢰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초기 30초 이내에 평가하게 되므로 개회사와 전달방법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전달자는 경험이 있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① 전달과 신뢰의 요소

- 공감/이해
- 정직/솔직함
- 헌신/책임
- 역량/전문적 지식

②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청중과 진실된 관계를 가진 전달자(messenger) 선택.
- 공공의 근심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취를 나타낸 개회소견 사용.
- 차분한 목소리의 전달자를 선택하고 발표 속도가 급하지 않아야 함.

③ 책임감 있는 정보 전달

- 모든 약속 및 공약을 지킴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효율적인 1:1 정보전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식회의에서 좀 더 일찍 오고 오래 머무름.
-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e-mail 주소 제공.

④ 역량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risk communication)

Do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자료 이용(대조표, 색인카드 등)</li> <li>- 청중과 상황에 맞는 복장</li> <li>- 자신감 있는 발표</li> <li>- eye contact</li> <li>- 신뢰감 있게 진술</li> <li>- 적극적인 경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적 연설 읽기</li> <li>- 과도한 복장</li> <li>- 무례하고 거만한 발표</li> <li>- 흐름을 방해(중단)</li> <li>- 너무 장황한 발표</li> </ul>

(3) Media

-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최상의 채널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주로 이용, 권장되는 대중정보 채널은 다음과 같음.
  - 뉴스
  - fact sheets
  - 출판물
  - 공장견학
  - 소그룹 회의
  -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1:1 미팅
  - 정보교환 포럼
  - 유료광고
  - 인터넷 웹 사이트 등

## 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 (1) 식품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

- 천석조는 “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2004)”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① 대상자의 이해

리스크 전달을 조직화하는데 있어 대상자들의 의도와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리스크 정보 전달에서는 관련된 모든 집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

#### ② 과학적인 전문가의 참여

과학적인 전문가는 리스크 평가자로서 리스크 평가의 개념과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③ 리스크 정보 전달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 확립

성공적인 리스크 정보 전달에서는 모든 관련 집단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됨. 이러한 전문성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 개발되어질 수 있음.

#### ④ 신뢰성 있는 정보원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의 정보는 그렇지 못한 곳으로부터의 정보보다 대중의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 대중에 의한 신뢰도는 위해의 본질·문화·사회 경제적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용과 그 접근법에 있어 개방 상태이어야 하며 시기가 적절하여야 함. 시기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많은 논쟁이 위해인자 그 자체보다도 “왜 좀더 빨리 위해를 말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임. 생략·왜곡·이기적인 진술은 장기적으로 신뢰성에 손상을 입히게 됨.

#### ⑤ 책임의 공유

국가·지역·지방의 규제 당국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정보 전달의 책임을 갖고 있음. 대중들은 정부가 위해 인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

대하고 있음. 이는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결정이 규제 혹은 자발적 조치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러하며 정부 결정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는 더욱 더 그러함.

⑥ 과학과 가치 판단의 구분

위해 인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는 사실(facts)과 가치(values)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실제적으로 현재 알려진 사실 또는 고려되어지고 있거나 수행된 리스크 과정에서의 결정된 불확실성을 보고하는 것이 유용함.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식품”이란 위해가 “0(zero)”인 식품을 의미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위해가 “0(zero)”라는 것은 보통 얻어질 수 없는 것임. 실제로 “안전한 식품”이란 필요한 만큼 안전한 식품을 의미함.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리스크 정보 전달에서는 중요함.

⑦ 투명성 확보

대중들이 리스크 분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함. 비밀(예를 들어 기밀 정보나 자료)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관계는 존중하면서, 리스크 분석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관련 집단에 그 과정을 공개하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리스크 관리자·대중·관련 집단들 간의 효과적인 양 방향 정보 전달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 부분이면서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됨.

⑧ 위해는 전체적으로 바라 본다

위해를 바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위해 인자를 담고 있는 기술이나 과정과 관련된 효용의 관점에서 위해를 살펴보는 것임. 다른 방법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위해인자를 대중에게 좀더 친숙하게 위해 인자와 비교하는 것임.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만약 문제가 되고 있는 위해 인자를 대중에게 좀더 만족스럽게 고의로 선택하여 비교한 경우라면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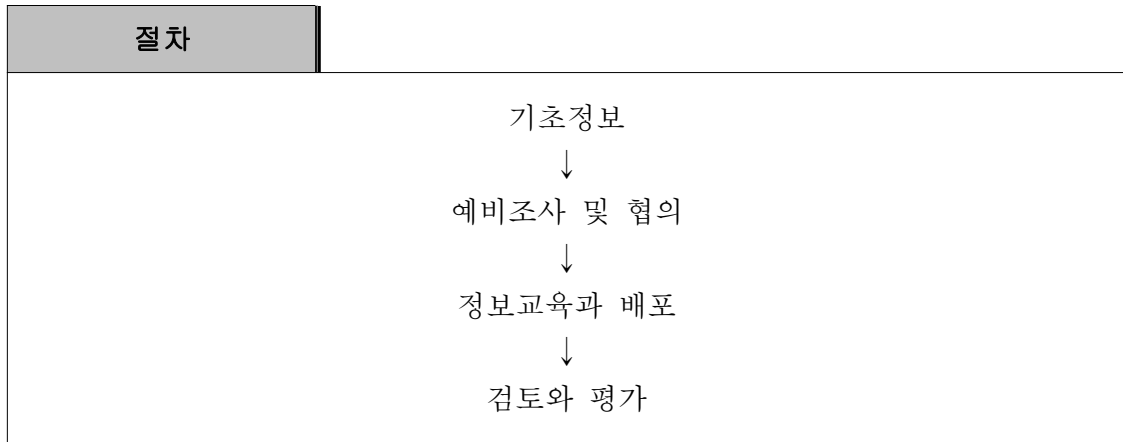
(2) 미국 EPA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7원칙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1988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음의 7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함.

- ① 국민을 파트너로서 받아들여 참가시킬 것
  - 목표는 지식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킨다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
- ②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 프로세스를 평가할 것
  - 목표, 청중, 매체가 다르면 다른 행동이 필요함.
- ③ 국민들의 특정 불안에 귀를 기울일 것
  - 국민은 잦은 통계나 상세한 사실보다 신용, 신뢰성, 능력, 공정함, 공감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됨.
- ④ 정직, 솔직함, 공명정대한 태도를 지닐 것
  - 신용 및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한번 실추되면 이를 다시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사람 및 기관 등)과 협력할 것
  - 조직간의 대립이나 의견 차이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곤란하게 함.
- ⑥ 대중매체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응할 것
  - 대중매체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보다는 정치,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 안전 보다는 위험에 관심을 나타냄.
- ⑦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할 것
  - 메신저가 질병, 상해, 사망 등을 비극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노력을 해서는 아니 됨. 국민은 리스크 정보를 이해하여도 행정과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

- 김광진(Introduction to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2005)에 따르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기초정보 → 예비 조사 및 협의 → 정보교육과 배포 → 검토와 평가”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짐.



(1) 제1단계 : 기초정보(background information)

- 식품과 관련된 공중보건의 잠재적 위험성 예상
- 위해(hazard)와 그 결과적 행동(반응)에 대한 대중의 인지 및 이해 판단
- 목표 청중들의 우려와 그들이 인지한 중요성에 대한 범위 설정
- 정보전달을 위한 최상의 채널 분석 및 이용

(2) 제2단계 : 예비조사 및 협의(preparation and assembly)

- 위해결정, 모니터링 등에 대한 조사
- 공유된 가치 및 접근방법 확인(식별)
- 관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적(scientific) 관점 보다는 인간적인 면 강조
- 매체 발표를 통해 메시지를 충분히 관심 있게 만드는 보충자료로 사용

(3) 제3단계 : 정보교육과 배포(dissemination and distribution)

- 대중매체 이용
- 의사교환 유지
- 다양한 방향에서의 리스크 전달
- 효율적 활동을 위해 대중이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함.
-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효율적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정보 및 건강교육

실시.

(4) 제4단계 : 검토와 평가(review and evaluation)

- 리스크 전달의 전략 평가
- 메시지의 분류 및 이해
- 리스크 분석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자료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정보의 통합
- 리스크 관리의 원리와 용도에 대한 리스크 평가자와 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

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방법에 따라 결정됨. 가장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내용 및 대상이 되는 청중을 고려하여야 함.
- 미국 EPA는 메시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은 메시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가능하며, 메시지의 종류도 인쇄물, 시청각물, 전자매체, 특별이벤트, 새로운 아이탬 등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단

인쇄물	브로셔, 사설, 교육과정, fact sheet, 뉴스레터, 신문, 잡지, 포스터, 호외, Q&A, 보충 유인물, 선전물
전자매체	케이블 TV 프로그램, 전시 및 거리 신문가판대, 고시, 비디오
특별이벤트	브리핑, 시민행사, 박람회, 페스티벌, 언론인터뷰, 일대일 미팅, 기자회견, 공청회, 연설
새로운 아이탬	현수막, 자동차 범퍼에 부착하는 광고스티커, 단추, 그림책, 자석, 마우스패드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1) 대상별 커뮤니케이션 방법

#### ① 동료

- 뉴스 발표 및 fact sheet
- 현지시찰
- 의문과 관심사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
- 핫-라인(hot line)
- 신문기사

#### ② 지역주민

- 지역 집회
- 신문기사 및 광고
- 라디오 및 TV의 토크쇼
- 전단 광고지
- 도서관에서의 영화, 비디오 상영 등
- 다이렉트 메일(direct mail)

#### ③ 선출공무원, 오피니언리더, 환경활동가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잦은 전화통화
- fact sheet
- 방문
- 지역 집회에 초대
- 뉴스 발표
- 사전통지

#### ④ 대중매체

- 대중매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에 중점을 둔 뉴스 발표
- 명료하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fact sheet
- 현지방문
- 기자회견

### (2) 효과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

- 농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관계자가 다음 사항을 신속히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
- 소비자등 관계자의 의문 등에 답하기 위한 상설창구 설치.
- 이해 관계자간의 수직 관계를 폐지하고 공동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임함.
- 대책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다음 단계 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로 관계자와의 대화를 실시.
- 정보공개 촉진과 미디어와의 협력관계 촉진을 도모함. 이를 위해 미디어와 평소부터 의견교환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관계자와의 협의체를 설치하고 개별 테마마다 기본적인 논점을 추출하여 둬.

① 내용

㉠ 진실성

○ 정확성

-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보(리스크 종류, 정도, 피해 크기 등)가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여부, 모순은 없는지, 리스크를 측정하거나 평가한 것은 누구(어느 기관)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내용이 논리적, 시간적으로 일관될 것.
- 테마를 명확하게 하며 전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실시.

○ 개시(開示)

- 요구된 정보는 가능한 제공할 것. 단, 보안, 특허,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는 예외로 함.
-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제공. 리스크 정보는 먼저 제공하는 것이 신뢰감을 높임.

○ 은폐가 없을 것

- 정보발신자는 적당한 정보만이 아니라 상태가 나쁜 정보도 제공하며 '리스크는 리스크로서 정정당당하다'고 할 것. 공정함이 정보 입수자에 대한 신뢰성 획득의 열쇠가 됨.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 것. 거짓말은 발각되며 발각된 후 원 상태로의 회복은 어려움. 또한 그 당시까지 쌓은 신뢰성을 한번에 잃게 됨.
- 신속한 대응(quick response)이 중요. 발표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됨.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때에는 조기에 회견을 실시하여 그 이유를 알리고 유예를 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㉞ 배려

#### ○ 평이함

- 일반인에게도 통할 수 있도록 설명은 쉽게 표현하며 알기 쉬운 비유도 유효함.
- 리스크를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결코 같지 않음.

#### ○ 존중

- 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관심과 가치관에 따른 내용으로 할 것. 상대가 처한 상황, 입장, 성격, 지식 등을 이해하여 단어를 선택할 것..
- 상대의 마음에 호소할 것. 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의문과 불안에 호소하는 단어가 간결한 표현으로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면 정보를 제공받는 측은 강한 감정적 공감을 나타냄

#### ○ 정보발송 기회

- 질문이나 의견 발언 기회를 주며, 구체적인 문의처 등을 명시하도록 함.

### ㉟ 정보 관리

#### ○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경우는 반드시 지적할 것

- 정보를 제공받는 측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흘리는 경우가 있음. 그 때는 반드시 오류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할 것.

#### ○ 양자택일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말 것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논해지는 대상은 많은 경우 불확정성으로 차 있어 YES/NO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많음.

- 가정의 질문에는 답하지 말 것
  - 불확정적인 상황이라도 자기본위의 가정을 방치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음.
- 유도심문에 무심코 휘말리지 말 것
- 소문 등에 근거한 것에는 휘말리지 말 것
  - 이러한 경우 질문자를 설득하는 형태로 가볍게 다루는 것이 좋음.

② 커뮤니케이션 표현

㉠ 표현의 방법

- 큰 소리로 강력하고 명료하게 천천히 할 것
- 얼굴을 들어 상대와 시선을 맞출 것
- 상대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취할 것
- 감정적으로 되지 말 것
- 복장은 청결하게 할 것
- 표현은 간결하게, 조건문의 잦은 사용이나 이중부정은 피할 것. 다만 중요한 점은 반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것.
- 알지 못할 때는 속이지 말 것. 모르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알게 된 시점에서 추가 설명을 할 것.
- 프리젠테이션은 논쟁이 아님. 목적은 상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며 문제를 이해하여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게 도움이 되는 결단을 지원하는 것. 상대에게 너무 이기려 하지 않으며 또한 너무 지지 않고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조절할 것.

㉡ 장(場)의 운영

- 한 번에 이야기하는 상대는 1인만으로 한정할 것
  - 복수의 사람이 동시에 말을 걸었을 때는 다른 한편을 제어하여 기다리게 할 것
- 주도권은 주권자가 잡을 것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사고하는 장소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장(場)

의 주도권은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갖도록 하여야 함.

- 회장에서 벽을 뒤로하여 공간을 비우지 말 것
  - 상대방이 배후에 있게 되면 불안감이 생겨 답을 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단상에 오르지 말 것
  - 평면이 아닌 장소라면 오히려 상대를 단상에 오르게 하는 편이 좋음.
- 사전에 리허설을 실시함
  - 거울을 향해 소리를 내면서 연습하는 것이 유효함.

#### 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 청중의 특성(audience characteristics)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청중은 다음 사항에 따라 특성 지워지게 됨
  - 주제와 정보에 대한 경험
  -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
  -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
  -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해당 기관에 대한 태도
  - 리스크 인지(perception)
    - 개인이나 어떤 사회집단이 유해한 생활환경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 심리적 요소들(psychological factors)은 리스크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줌.
  - 진실과 신뢰의 의지
    -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accuracy), 전문적 지식(expertise), 솔직함(openness), 선입관(bias), 공공복지를 위한 관심.
- 리스크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스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덜 불안하고 덜 염려하게 됨.

risk는 _____
<p>관찰할 수 있다  노출정보가 알려져 있다  즉효가 있다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다  관리(제어)가 가능하다  합리적이다  쉽게 감소된다</p>

## (2) 전달자의 특성(Messenger characteristics)

- 전달자의 특성은 청중이 위험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주게 됨
- 즉, ‘i) 전달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달자인가? 즉 관계자와 비관계자인가? ii) 잘 훈련된 전달자인가? iii) 전달자가 신뢰성이 있는가?’에 따라 청중의 위험정보 수용이 좌우됨.

## (3) 메시지의 특성(Message characteristics)

- ‘i) 위험정보가 얼마나 복잡한가? ii) 메시지가 다른 것들과 분쟁의 여지가 있는가? iii) 비의도적으로 위험정보가 전달되는가?’와 같은 제공되는 메시지의 특성은 위험정보의 인지(이해)에 영향을 주게 됨.

## 카. 이해관계자의 역할 등

- 식품의 안전을 고려할 때는 각각의 입장과 경험, 지식 등에 따라 관계자간의 리스크 파악 방법이 크게 다름. 이러한 차이 발생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노력으로 보다 나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리스크라 하더라도 화재와 지진이라는 리스크와 식중독 같은 리스크에는 해석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또한 리스크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책에 관련될 수 있는 비용과 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가, 또는 수용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계자간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를 비롯하여 관계자간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로써 의무교육 수준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설명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 시민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을 깊이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반드시 관계자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와 의견 교환을 누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관계자 사이의 입장과 인식의 괴리에서 생기는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여야 함.

(1) 관계자의 역할, 대처와 제휴

① 국가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용어집 등 기초적인 자료의 정비와 해당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의 작성, 제공 등이 필요함. 관계자와의 긴밀한 연락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의문과 질문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참가하기 쉬운 형태의 의견교환회(또는 토론회 등) 설정, 의견 조정, 관계자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문제의 지적, 위험정보의 소통, 상담창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리스크 평가기관, 리스크 관리기관과의 제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를 확보하여 충분한 관계자의 의사소통을 도모함. 또한 이와 함께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조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 소요 경비 및 시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함.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과 가장 긴밀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을 테마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주민이 문제를 이해하여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수, 과학적 지식, 생활

신조, 건강상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유한 정보를 가능한 생활에 적합한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며 또한 제공한 정보가 주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이해 되는가 등을 파악하고 제공정보의 재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을 도모해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광역적인 식품유통과 정보전달의 다양성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정보가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 때문에 향후 국가 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③ 식품관련 영업자

- 제조, 수입, 유통, 판매와 관계없이 식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된다는 인식을 갖고 행동하며 관계자간의 제휴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 원인 식품안전 사건·사고 등의 경우 법규상의 책임은 명확하지만 그 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영업자 자신도 궁지로 몰아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음. 생산자를 비롯한 모든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안전 관계자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과학적 근거에 따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리스크 대응의 경우 “피하지 않으며 숨기지 않고 솔직할 것”이라는 방침을 결정하여 “피해자 구제, 피해 확산방지,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평상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고려할 것.
- 평소의 정보내용과 그 제공 자세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긴급 시 정보를 제공하여도 제공 대상자는 이를 돌아보지 않음. 평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절하게 실시함으로써 긴급 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하며 효과적인 실시가

가능하게 되므로 자사 및 자사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직과 인재, 시스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표시사항의 경우 식품포장업자와 제조업자간의 제휴 등 안전성면에서 식품 관련 영업자간의 제휴가 요구됨.

④ 소비자

-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여 식품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에 적절히 참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의견 표명이 가능한 자리와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가 어느 사건의 유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와 대학 등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하는 것도 필요함.
- 생산자, 소매업자 등의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의견 교환을 실시하여 관계자간의 신뢰관계를 키워가는 것이 “긴급 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실시” 전제가 됨.
- 또한 매일 구입하는 물건도 왜 그 식품을 선택하는가를 인식하여 소비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함.

⑤ 대중매체

-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특히 대중매체가 관계자 전체에게 신속하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정도는 매우 크다 할 것임. 또한 행정과 생산자, 기업 등으로부터의 정보공개를 재촉할 수 있도록 취재하여 정보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 한편으로 일부 미디어에서는 부적절한 보도가 이루어져 리스크 성질과 크기에 비하여 과도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으므로 미디어는 한층 과학적인 데이터와 통찰력에 기초한 보도가 요구됨.
-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대중매체는 사실에 기초하여 적시에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식품의 효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또한 소비자 등 정보 수혜자의 식품 선택 등 판단을 위한 적절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저널리스트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 ⑥ 전문가

- 과학자와 연구자는 리스크 등에 대한 설명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과학자,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며 또한 이를 개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관련 학회와 학술단체는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문의를 하기 쉬운 형태의 창구를 설치하여 평이한 설명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식품의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가간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그 배경과 근거를 명시하여 다른 관계자의 이해를 돕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여러 국가와 국제학회, 타 분야의 학회가 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 보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여 보다 나은 국제협력관계의 실현을 위한 공헌과 필요에 따라 전문가끼리의 의논을 공개하는 등 과학적 의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함. 식품의 리스크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 (2) 관계분야와의 제휴

#### ① 교육

- 식품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가 냉정하게 대응·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읽고 해석하기, 스스로 섭취하는 식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정보와 허위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함.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 수혜자가 그 정보를 판별하는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식품관련 영업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교육 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함.

#### ② 정보공개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보호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식품의 위해정보, 식품건강영향 평가와 관리조치에 대해서 정보 등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보에는 관계자 모두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함. 관계 당국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를 공개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되 단 개인의 비밀, 기업의 지적 재산권 등이 공개되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안전성에 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③ 소문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

- 소비자가 건강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위 다이옥신 사건과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소비자, 소매업자 등이 과하게 우려하여 이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생산자, 제조업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그 피해가 어디까지 소문에 의한 것인가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어디까지가 소문인가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이용해서는 안됨. 그러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기능을 하면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경감된 케이스도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향후 이 “소문피해”에 대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과제로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소비자와의 접점이 되는 판매장은 안전제일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지만 안전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매장에서 상품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자에게 옳지 않은 정보(소문)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음. 그 한편으로는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식품을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은 신용을 크게 잃을 수도 있음. 과학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재빠르게 입수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줄여가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함.

## 타. 커뮤니케이터 양성 교육

### (1) 교육의 필요성

- 정보를 제공하는 측(커뮤니케이터)과 제공받는 측 모두 훈련이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제공측은 상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하며 정보전달(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때 커뮤니케이터는 확률사상의 전달 어려움을 이해하는 능력과 정보 전달능력 이 두 가지 지식과 능력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실천경험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훈련을 위한 계획적인 양성·연수를 실천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후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 발송 정보의 내용과 정보전달의 기법 등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에 의한 연수뿐만이 아니라 양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조직에 있어서의 규범형성이 반드시 필요함.

### (2)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구성

#### ① 강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후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에 대하여 실시
- 콘텐츠·프리젠테이션에 대하여 실시
- 리스크 분석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치
- 전문가를 모으는 기술

#### ② 실습

- 실습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도록 함
- 콘텐츠 : 언론 발표용 원고 작성
- 프리젠테이션 : 언론 발표 role-playing

#### ③ 실습 효과 유지 위한 규범 형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의 원활한 활약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및 규범 구축

(3) 커뮤니케이터 양성 시 고려사항

-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의 훈련이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 제공측은 상대의 입장에 서서 고려한다는 기본이 있어야 하며 정보전달 기법을 적확하게 익히기 위한 훈련이 필요.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능력은 크게는 리스크라고 하는 확률사상의 전달 어려움을 이해하는 능력과 정보전달 능력 이 두 가지 지식과 능력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 실천경험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에 대하여 이러한 훈련을 위한 계획적인 양성·연수를 실천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후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 발송 정보의 내용과 정보전달의 기법 등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에 의한 연수뿐만이 아니라 양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규범형성이 필수불가결함. 이 점을 유념하여 연수와 조직 구성·규범 설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함.

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효과 평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추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각각 구성요소에 관하여 무엇이 잘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고려하여야 함.
- 효과 평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각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목표는 달성 되었는가
  - 변화는 프로그램 실시 결과인가
  -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 그 교훈을 학습할 사람은 누구인가

- 커뮤니케이션의 평가(evaluation)작업은 커뮤니케이션 이외의 추가부분이 아니며 커뮤니케이션 평가 계획의 수립은 평가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효과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리스크 전달의 효율성과 충돌(영향)을 결정하기 위함.
  -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결과를 강조하기 위함.
-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그 목적과 유형에 따라 형태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음.

&lt;표 2&g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효과 평가

	형태적 평가 (Formative evaluation)	총괄적 평가 (Summative evaluation)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시작</li> <li>-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줌</li> <li>- 결과도출을 위한 토대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끝</li> <li>- 위해전달 목적(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을 충족 여부 결정</li> </ul>
평가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검토</li> <li>- 매체(media) 내용 분석</li> <li>- 청중의 조사(설문조사, 여론조사, 특정그룹, 인터뷰, 관찰)</li> <li>- 토론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media) 내용 분석</li> <li>- 청중의 조사</li> <li>- 결과 보고</li> <li>- 행사참석</li> <li>- 사회적, 행동적, 경제적 지표들</li> </ul>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과 평가 방법은 크게 여론조사, 언론모니터링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음.

## (1) 여론조사

## ① 일대일 면접 조사(one-to-one interview)

-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조사 방법.
-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견, 태도 조사 가능.

- 다소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함.

② 설문조사(survey)

-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사방법.
- 설문지의 표현방법, 구성은 물론 조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편견이 작용할 소지 있음.
- 특정 이슈와 관련된 조사보다는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증이나 의견 등을 파악하는데 많이 사용.

※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 등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인 의견 교환회 등 실시 후 해당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측정 등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개최 기획 전반 및 구성에 대하여
- 참가자 구성 및 모집 방법
- 설명내용 난이도에 대하여 : 의견교환회의 이해도·만족도 등의 경우 설명 이해도, 의견교환 이해도, 의견교환회 만족도등을 평가함. 또한, 의견교환회 참석 후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 평가함.
- 슬라이드·자료·장소 등에 대하여
- 패널 토론 및 의견교환에 대하여
- 시간 배분에 대하여
- 사전 질문에 대한 회답에 대하여

③ 온라인 조사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실시 가능.
- 표본 구성이 한정되어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짐.
- 다양한 생각과 의견, 태도 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주로 사용.

④ 전화조사

- 가장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있음.
- 갑작스러운 이슈나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

⑤ 휴대폰 조사 (mobile survey)

- 휴대폰 소지자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신속하게 조사 가능.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표성 확보 용이함.

⑥ 패널조사(panel discussion)

- 대표성을 띤 오피니언 리더나 일반 국민 패널을 구성하여 자유토론이나 면접,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의견이나 아이디어, 정보 등 입수.
-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구성원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막기 위해 구성원의 정기적 교체 필요.
- 주로 정책의견조사, 아이디어 탐색 등에 많이 활용.

(2) 언론 모니터링

① 이슈 모니터링

-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이슈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흐름이나 태도를 파악.
- 커뮤니케이터가 해당기관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자문, 올바른 보도 자료의 작성, 내용구성, 배포 등을 가능하게 함.

② 기회 모니터링

- 최근 매체의 숫자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핫뉴스 보다는 소프트한 뉴스, 고정칼럼, 인터뷰, 기획특집 등을 통한 홍보기회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보도자료, 배경자료 제공, 브리핑 등을 할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

③ 보도결과 모니터링

- 배포한 보도 자료에 대한 보도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
- 언론보도 결과가 당초의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 수정 보완 가능.

하. 그 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고려 사항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전 고려사항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 상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일본의 山田 友紀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기 전 커뮤니케이션 대상자는 누구인지, 대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동료인지 지역주민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함.
  - 대상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 어떻게 하여 당신이 원하는 정보와 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 모두를 얻는가?
  - 언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커뮤니케이션 대상	
· 동료	· 대중매체
· 지역주민	· 규제관청
· 선출공무원	· 환경활동가(분야에 따른 전문가)
· 시민단체	· 청부업자
· 의료제공자	· 기타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징	
· 불안	· 지식 정도
· 태도	· 의견
· 관심 정도	· 관심을 갖게 된 이유
· 관여 정도	· 관여 종류
· 역사	

- 일본 山田 友紀子가 제시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시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부·생산자·제조자는 소비자를 리스크 분석 파트너로 합류시킬 것.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상(소비자, 과학자, 제조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 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선택할 것.
  -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님을 명심할 것.
  -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것.
  - 정직, 솔직하게 공개하며 또한 명료하게 할 것.
  - 대중매체(보도기관)의 니즈(needs)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되 과학적 사실은 왜곡하지 말 것.
-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규정(rule)의 작성 전·후 가급적 자주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매스컴과의 인터뷰, 업계와 소비자와의 회합 등에 있어 실시할 것을 제시함.
- rule 작성 전·중간·후 : 가능한 많이 실시
  - 매스컴과의 인터뷰
  - 전문적인 문서
  - 업계와 소비자와의 회합
  - 재판과 국회에서의 증언
  - 검사
  - 국제회의 등
- 한편, 山田 友紀子는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인지된 리스크를 실제 리스크 보다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함.

정보량 小	>	정보량 多
미지의 리스크(신기술 포함)	>	이미 알고 있는 것
타인이 컨트롤	>	스스로 컨트롤
이익이 불분명	>	이익이 명확함
영향이 불공평	>	일률적인 영향(이익도 해당)
대규모의 피해	>	소규모의 피해
합성물질	>	자연에서 유래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음	>	불확실성이 낮음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 “화학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가이드(2001)”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 두 가지로 나뉨.
  - 화학물질의 리스크는 “0(제로)”가 될 수 있음.
  - 대형 마스크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음.
  - 화학물질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화학적으로 상당히 해명됨.
  - 학자는 객관적으로 리스크를 판단함.
  - 일반시민은 과학적인 리스크를 이해할 수 없음.
  - 정보를 제공하면 쓸데없는 불안을 불러일으킴.
  -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이해를 받음.
  -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짐.
  - 정보제공과 설명회, 의견공모 등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임.

### (3)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요소

- 청중에 대해 알 것 (Know the audience).
- 숙련된 전문가를 포함할 것 (Involve the scientific experts).
-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문적 지식을 정립할 것 (Establish expertise in communication).
- 정보의 확실한 출처가 있을 것 (Be a credible source of information).
- 책임을 공유할 것 (Share responsibility).
- 지식과 가치판단을 구별할 것 (Differentiate between science and value judgments).
- 상호의 동의를 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 (Provide ample opportunity for two-way communication).
- 여러 관점에서 리스크를 생각할 것 (Put the risk in perspective).

### (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오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건강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리와 실제 입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

	DO	DON'T
특수용어	전문용어와 약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비록 일부의 청중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용어를 사용하는 것
유머	유머를 사용할 때에는 메신저 자신을 대상으로 할 것	안전성, 건강,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부정적인 주장	근거 없는 주장은 반복하지 말고 반박할 것	근거 없는 주장을 복창 또는 언급하는 것
부정적 이미지 어구	긍정적 또는 중립적인 어구를 사용 할 것	정부수준 문제를 언급하는 것
말에 의지하는 것	중요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수단을 사용할 것	언어에 의지하는 것
기분	냉정을 지킬 것. 의문점과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긍정적인 것을 말할 것	감정적으로 되어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
명료성	말하고 싶은 것을 명료하게 말하였는지를 자문해볼 것	스스로 이해했다고 믿어버리는 것
추상화	실례, 유사 사례를 들어 공통 이해를 구축할 것	-
단어 이외의 메시지	단어 이외 제공자가 발산하는 메시지에 민감할 것. 이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킬 것	보디랭귀지, 회장에 있어 제공자의 위치 및 의복을 제공자의 이미지와 모순되게 하는 것
공격	공격은 문제를 대상으로 할 것	공격을 사람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증	달성한 것,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할 것	지키지 못하는 약속, 최후까지 책임을 갖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
추측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보증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금전	건강, 안전,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언급할 것. 공중위생에 대한 당신의 도의적인 의무는 재정적인 고려에 우선함	정보제공자의 염려의 예로서, 소비된 금전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
조직 소속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것(나, 우리)	큰 조직의 일원임을 전면에 나타내는 것
비난	문제해결의 분담 책임을 질 것	비난과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DO	DON'T
off the record	이야기한 것 모두 공개기록의 일부로 볼 것	부가적인 주석을 더하거나 비밀이야기를 하는 것
리스크/이익/비용 비교	리스크와 이익을 각각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논할 것	비용을 리스크의 정도로 결부시켜 의논하는 것
리스크의 비교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리스크 비교를 할 것	관계없는 리스크를 비교하는 것
건강리스크에 관한 숫자	리스크는 “0”~ 최악의 경우 추정치 사이에 있음을 강조할 것, 리스크에 관한 숫자보다도 국가 및 지방 정부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국민이 리스크에 관한 숫자를 이해할 것을 기대하는 것
숫자	실적, 경향, 달성할 것을 강조할 것	큰 부정적 숫자를 열거하거나 반복
전문적인 내용과 토론	당신의 발언을 공감, 필요로 하는 능력, 성실함, 헌신성 등에 집중시킬 것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한다거나 장시간에 걸쳐 전문적인 토론에 참가
설명시간 길이	설명시간은 최대 15분간으로 할 것	예정시간을 계획하지 않고 산만하게 실시

## 제2절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1. 국내 현황

- 최근 우리나라에도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기법의 도입에 따라 리스크 분석의 구성요소인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리스크 분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구 등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본과 같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청회, 민원설명회 등은 실제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환경부 등의 홈페이지를 기초로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현황을 조사함.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 (1) 관련 조직 및 활동

-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관리단에는 위해관리팀, 위해기준팀, 위해정보팀을 설치하여 식품안전 위해의 분석, 관리, 정보의 분석·관리 및 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팀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식품위해정보관리 - 위해정보의 수집 및 분석, 공유”를 주 업무로 담당(직원 9명)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보의 중요도·심각성·민감성·지역성·대상의 포괄성 등을 검토·분석·공유·DB화 하며 사실 확인·평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이슈화를 타진하는 과정”을 식품위해정보관리라고 정의함.
- 최근(2006.10) 식약청 위해정보팀에서는 “식품 등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을 작성, 동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함.
- 동 매뉴얼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략적 이해와 식약청에 대한 기관 및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정리하여 커뮤니케이션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 시 중요한 커뮤니케이터, 이해관계자 선정·분석, 효과적인 매체 선정 및 대중매체에 대한 전략 등을 수록하여 필요시 활용하도록 함.

- 동 매뉴얼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일반 절차
  -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 커뮤니케이터 지정, 대상, 임무, 자질
  -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목표설정,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내부 커뮤니케이션 : 위해대안의 검토 및 평가
  - 외부 커뮤니케이션 : 이해관계자 선정, 분석, 매체 선택 및 이행, 대중매체
  - 효과측정 : 여론조사, 모니터링
  
- (2)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는 생산에서 섭취에 이르는 식·의약품(농축수산물 포함) 흐름 전반에 관한 범국가적 식·의약품 정보공유 및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 국민 등 사용자 중심의 일원화된 “식·의약품 종합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시스템은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에 식품안전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함.
  - 그동안 각 부처별, 업무분야별로 부분적인 전산화 및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 부처내 및 부처간 정보공유 및 정보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해 요소 발견 시 체계적인 전파체계 부재, 과학적 위해도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 미흡, 범정부적 차원의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 및 대국민 종합정보제공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다원화된 관리체계 하에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식품안전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 공동 활용체계가 필요하였음.
  - 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관련부처 및 기관간 위해정보의 공유채널이 구축되어 식품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위해정보 평가” 및 “긴급대응” 등과 관련한 기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①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 식약청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식약청의 일방적인 정보제공보다는 소비자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활동 중 양방향의 것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관련 메뉴는 다음과 같음.
  - 정보공개 > 행정예고
  - 참여마당 > 토론마당, 국민제안, 설문조사, e-정책포럼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민원설명회

㉠ 정보공개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li> <li>· 해당 내용 중 “<u>행정예고</u>”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례로 볼 수 있음</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관형식 운영



<그림 3>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행정예고

<p>제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li> <li>· 행정예고 실시 식품관련 규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기준 및 규격</li> <li>- 식품등의 표시기준</li> <li>-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li> <li>-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li> <li>-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li> <li>-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li> <li>-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li> <li>- 식품등관능검사기준</li> <li>-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li> <li>- 소비자식품우생감시원 운영지침</li> <li>-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등에 대한 기준</li> </ul> </li> <li>· 행정 예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li> <li>-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i> </ul> </li> </ul>
<p>정보 발생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식품관련 규정의 제·개정시</li> </ul>
<p>제공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li> </ul>
<p>제공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관형식 운영(제·개정된 관련 규정은 첨부파일로 제공)</li> </ul>



<그림 4>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㉞ 참여마당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전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원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가능 함</li> <li>· 해당 내용 중 토론마당, 국민제안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li> <li>· 참여마당의 설문조사 및 e-정책포럼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활용실적이 없음</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실명확인 후 식품전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한 각종 의견 및 개선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게재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5>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토론마당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전반에 관한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함</li> <li>·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 자유롭게 답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실명확인 후 식품전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한 각종 의견 및 개선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게재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답 글을 올릴 수 있음)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림 6>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 국민제안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li> <li>·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내용, 개선 시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 작성</li> <li>· 게시된 제안에 대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제안에 관한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음</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실명확인 후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 등에 관한 각종 의견 및 개선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개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관형식 운영



<그림 7>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㉔ 알림마당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청의 일반 행정 및 홍보사항 등을 공지</li> <li>· 식품관련 각종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li> <li>· 해당 내용 중 ‘알려드립니다’와 ‘민원설명회’코너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설명회 및 새소식 알림 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8>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알려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라는 메뉴 운영 자체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메뉴를 통하여 민원설명회, 식품안전열린포럼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공지함.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지사항, 식약청 핫이슈, 새소식, 이달의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약청 핫이슈 코너를 통하여 언론 및 소비자단체 보도 등에 대한 식약청 입장과 향후 계획 등 설명</li> <li>· 그 외 공지사항 코너 등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 일정을 공지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세미나 등의 일정 공지 및 새소식 알림 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림 9>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민원설명회

- 민원설명회 개최 계획 등 안내 공지는 하고 있으나 민원설명회 실시 후 에 대한 결과 및 해당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음.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 등 관련법령, 규정 등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li> <li>· 주로 사전 공지하는 형식</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시
제공대상	· 관련기관 등 관계자
제공형태	· 게시관형식 운영



<그림 10>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8

## ② 오프라인(off-line) 활동

- 식약청의 정책 담당자,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실질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인 오프라인(off-line) 활동은 최근 다양화되고 있으며 운영 또한 활발함. 특히 식품안전정보와 관련한 정보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주목 할만 하며 그 외 정기적인 식품안전열린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각종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규정 설명회 및 정책 설명회
  - 식품안전열린포럼
  - 정보교류협의회
  - 건기식 수요모임
  - HACCP 기술지원 세미나
  - 각종 식품안전 관련 워크숍
- 그러나, 각종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실시 후 관련 결과 자료(회의록, 발표자료, 결과요약,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일본과는 달리 식약청에서는 민원설명회 등의 발표 자료만을 일부 제공하고 있음.

## ③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평가 사례

- 식약청의 “식품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휴대폰조사, 패널조사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와 언론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함.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 중 온라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식약청의 식품관련 정보제공과 관련한 정보의 신뢰도, 공정성, 이해도, 정보제공의 시기 적절성 등에 대하여 조사한 사례가 있음.



<그림 11> 식약청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평가 사례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식약청의 국민의식 설문조사 주요내용>

1. 귀하는 식약청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식약청은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적절한 시점에 식품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는 식품안전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으십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경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9. 귀하가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얻을 때 주로 의존하는 언론매체는 무엇입니까?

- 식약청은 농림부와 달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해당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 최근 “식품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을 작성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인 양방향의 의견교환의 기회로 식품안전열린포럼, 관련 규정 설명회 및 정책 설명회 등을 활발히 실시함. 특히 관련 규정 설명회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효과 측정을 위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함.

## 나. 농림부

### (1) 관련 조직 및 활동

- 농림부는 농식품 관련 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유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에서 농식품 안전정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일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긴급 상황 시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을 작성·운영하고 있음.

### (2)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 특히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2005년부터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의 공동 활용과 위험정보를 수집·전파, 환류하는 쌍방향의 위험 정보교환채널(Risk Communication Channel)을 구성, 농축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기반 마련”을 위하여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축수산물 위험정보에 대한 수집, 평가, 분석, 추적, 보고, 배포(전달) 등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위험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 개발하도록 함.
- 농축산물 안전정보 공동 활용 및 위험정보 관리시스템은 농축산물 안전정보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공동 활용을 위한 초기 DB 구축, 농축산물 위험정보의 수집·평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가·배포를 주축으로 하여 농림부의 향후 농림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향이나 시스템 구축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임.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①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일하게 1차적으로 농림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식품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례 조사함. 홈페이지의 전체 메뉴 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분류되는 메뉴는 다음과 같음.

- 국민 참여마당> 참여광장, 제안광장, 자유 토론방
- 정책포커스> FTA, 쌀 산업 보완대책, 맞춤형농정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축산물브랜드 육성,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농촌복지 및 지역 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친환경농업, 최근이슈
- 농림소식> 보도자료, 정책자료, 국회관련정보코너

② 국민 참여마당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와 사이트 방문자들 사이의 의견공유 공간으로, 농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업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며 자유로운 의견을 개재할 수 있도록 함.</li> <li>· 해당 내용중 <u>참여광장, 제안광장, 자유토론방</u>이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태 운영





<그림 11>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참여광장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현안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문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li> <li>· 하위메뉴로 정책포럼방, 지난포럼보기, 설문조사로 구성</li> <li>· 해당주제를 선택하면 토론에 참여가능하고 토론에 관한 의견은 모두에게 공유되며 새로운 주제를 원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li> <li>· 2006년 6월 26일자로 농림부 전자민원창구가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서비스제공</li> </ul>
정보 발생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농정현안 등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새 토론주제를 제안할 수 있음</li> </ul>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li> </ul>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판형태 운영</li> </ul>



<그림 12>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제안광장

<p>제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농업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li> <li>· 실명확인 후 아래 내용에 따라 제안내용 작성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문제점</li> <li>- 개선방향</li> <li>- 기대효과</li> </ul> </li> <li>· 2006년 6월 26일자로 농림부 전자민원창구가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서비스제공</li> </ul>
<p>정보 발생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li> </ul>
<p>제공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li> </ul>
<p>제공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판형식 운영</li> </ul>



<그림 13>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자유토론팜

제공내용	· 농업관련정보 또는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공간으로 활용 · 실명확인 후 자유롭게 의견개제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해당 의견이 있을 시에 자유롭게 개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14>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② 정책포커스

제공내용	· 농림부의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 · 정책포커스는 농림부의 정책방향 및 목표에 대한 설명과 현재 농림부의 주요 정책인 FTA, 쌀 산업 보완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하단에 FAQ와 '관련자료'를 링크시켜 사용자가 클릭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일방적 정보제공임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주요정책의 변경 시 해당 정보 변경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웹 페이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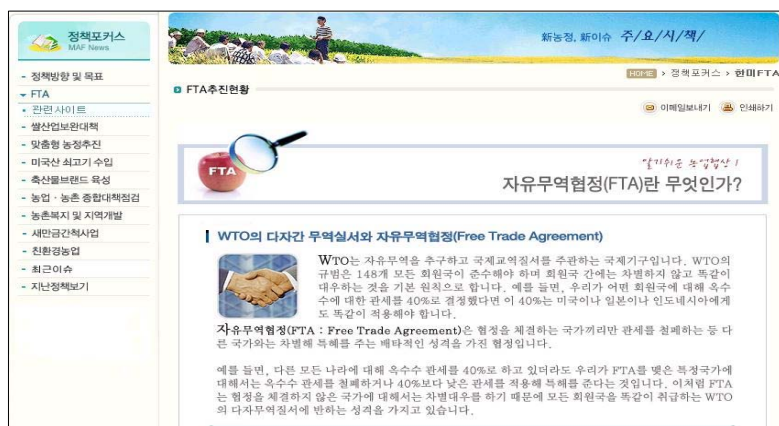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림 15>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 FTA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의 개념과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li> <li>·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일방적 정보제공 수준이며 FTA 관련 정보 하단에 'FAQ'와 '관련자료'를 링크시켜 사용자가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li> <li>· 하위메뉴에 FTA 관련 국내의 사이트 주소를 링크시켜 제공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정책의 변경 시 해당 정보 변경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웹 페이지 형태



<그림 16>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㉔ 농림소식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의 새소식을 알리고 검색을 통해 확인한 포럼 등 운영 현황을 알림</li> <li>· 해당내용 중 <u>보도/해명자료</u>, <u>정책 자료</u>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농림관련 포럼개최 및 새소식 등의 발생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lt;그림 17&gt;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 보도해명자료

-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검색 결과, 농림부 정책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것은 확인이 어려웠으며 설명회와 관련한 별도의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함. 또한 개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li> <li>· 설명회 안내 정보는 별도의 형식이 아닌 일반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li> </ul>
정보 발생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설명회 개최 예정 시 정보제공</li> </ul>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등 관계자</li> </ul>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판 형식 운영</li> </ul>



<그림 18>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정책자료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자료에서는 농림업무 진행현황 및 농림관련 지침 및 자료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위생교육계획안내 및 농림관련 교육자료 등을 제공</li> <li>· 법령자료에서는 농림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li> </ul>
정보 발생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농림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정보제공 농축산물 위생교육 시행 및 교육자료 배포 시 정보제공</li> </ul>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li> </ul>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판 형식 운영</li> </ul>



<그림 19>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8

②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 최근 농림부에서는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농림부와 소식기관의 각종 시책, 국내·외의 식품안전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평가자료, 바른 먹거리 선택 방법 등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과 더불어 생산자, 소비자, 정부관계자 등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마련함. 즉 본격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림 20> 농림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9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③ 오프라인(off-line) 활동

- 농림부는 2005년 7월 식품과 관련된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논의 동향, 향후 방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효과적인 정책수행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를 설립함.
- 동 연구회는 농림부 및 산하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촌진흥청, 유관기관, 관련 정부부처, 민간연구소 및 대학, 비영리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리뷰 및 전파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 기반 마련에 노력함.
- 그 외 농림부 관련 정책 설명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농식품과 관련한 내용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개최 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농림부에는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웹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농식품 안전 정보 서비스”를 시작함.
- 양방향의 의견교환의 기회인 농식품 관련 정책 설명회 및 포럼의 개최 현황은 저조하나 농림부 및 산하기관 등이 주축이 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를 설립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다. 환경부

### (1) 관련 조직 및 활동

-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등 환경 분야에서 가장 먼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식품 등 안전관리 기관이 아닌 환경부에 대해서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조사함
- 환경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주 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 ①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 환경부 또한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정보제공보다는 소비자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활동 즉 양 방향적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공지·공고
  - 참여마당> 장관과의 대화, 국민제안, 환경정책 토론폰방
- 한편,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의 직접적 사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환경부에서는 설명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 보다는 단어 그대로의 정책 설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정보제공 형태를 확인함.

#### ② 알림마당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관련 동향을 알리고 환경정책에 관한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li> <li>· 해당 내용 중 <u>보도·해명자료와 공지·공고</u>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환경부 새소식을 알리거나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 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보도·해명자료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가 배포하는 보도 및 해명자료로 환경부 정책 등을 알리며 언론 및 소비자단체 보도 등에 대한 환경부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li> <li>· 환경 정책에 관한 각종 공청회,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li> <li>· 환경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최안내</li> </ul>
정보 발생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① 환경 관련 정책의 변경 및 각종 보도 자료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시 ② 환경관련 워크숍, 설명회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최 시, 환경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시</li> </ul>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등 관계자</li> </ul>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숍, 설명회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최 등의 안내 정보는 별도의 형식이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됨</li> <li>· 게시판 형식 운영</li> </ul>



<그림 21>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공지·광고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련 회의, 세미나, 설명회, 각종 대회 등 제공</li> </ul>
정보 발생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회의, 세미나, 설명회 등 사전공지</li> </ul>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li> </ul>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li> </ul>



<그림 22>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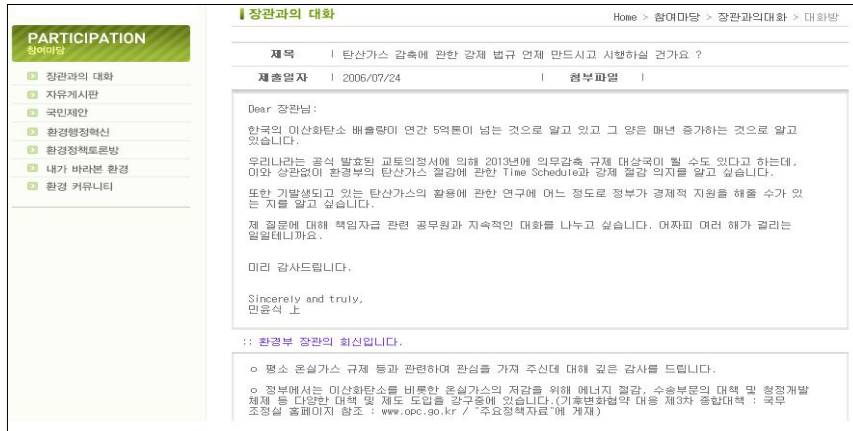
㉞ 참여마당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해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활용</li> <li>· 해당 내용중 장관과의 대화, 자유게시판, 국민제안, 환경정책토론평, 환경 커뮤니티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회의, 세미나, 설명회 등 사전공지.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 장관과의 대화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와 관련된 각종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장관과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내용 공개</li> <li>· 환경정책에 관한 제안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등을 제시하면 환경부의 입장 등을 회신</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림 23>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자유게시판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내용 중 자유발언대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됨</li> <li>· 환경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li> <li>· 참여자 상호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그림 24>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 ○ 국민제안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편을 느끼는 제도나 보다 나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제안을 받아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화 및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li> <li>·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답글이 회신되며, 정부시책 마련 시 참고</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lt;그림 25&gt;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 ○ 환경정책토론폰방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토론폰방은 포럼과 설문조사로 구성되며 환경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참여토론의 장으로 활용됨</li> <li>· 포럼은 환경부가 포럼주제와 그 주제에 관한 전반적 현황을 제시하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찬성, 반대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li> <li>· 현재 환경정책토론폰방이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 운영됨</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가입 회원만 이용가능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그림 26>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환경 커뮤니티

제공내용	· 민간환경단체 커뮤니티 및 일선공무원의 현장경험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운영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환경커뮤니티 회원만 이용가능
제공형태	-



<그림 27>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② 오프라인(off-line) 활동

-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작성, 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기업환경보고서를 작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여기서 환경보고서란, 일정기간마다 기업의 환경관련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기업의 환경관련 방침이나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임.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경보고서의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절차의 참고는 식품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1단계 : 환경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 2단계 : 이해관계자 설정  
설문조사, 워크숍, 시장조사, 공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등을 이용하여 환경보고서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내용을 분석
- 3단계 : 환경영향 및 환경성과 분석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환경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노력의 성과를 분석
- 4단계 : 환경정보 공개항목의 개발  
환경영향 및 환경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발함
- 5단계 : 환경정보 공개방법 개발  
환경정보 공개항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개방법을 개발함
- 6단계 : 측정 및 평가  
데이터 수집(collecting), 조합(collating), 분석(analysing)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함
- 7단계 : 환경정보 공개내용 검증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의 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함
- 8단계 : 발간·배포 및 피드백(feed back)  
환경보고서를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정보내용을 보완함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그 외 화학물질 등의 안전 및 환경 정책등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식약청, 농림부 등과 같이 개최 결과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환경부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해관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인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관련 자료의 적극적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음.
  
-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작성하여 관련 기업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함.



## 2. 국외 현황

- 김영민의 “식품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대중을 교육시키는 것이었으나 과학적인 근거만으로는 대중을 위한 효율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없고 정책의 효율성을 얻기 힘들어 최근에는 그 목적이 점차 위험상담(risk consultation)으로 변화하고 있음.
- 즉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은 그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참여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임.

### 가. 일본

- 일본에서는 원자력이나 환경 중 화학물질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대응이 선행되었지만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짧아 양방향의 의견교환 등이 시작되었을 뿐임.

####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식품 분야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의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는 공적 기관에서의 정보 공개와 그에 대응하는 보도, 소비자의 이해라고 하는 일방적인 단방향의 흐름이 주가 되었음. 또한 일부 심의회와 public comment 등의 기회에 소비자 대표가 시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역방향의 정보·의견 흐름은 한정되었음.
- 2001년 9월10일에 일본에서 BSE가 의심되는 소가 발견된 이후 식품안전행정 구조를 대폭 변경하게 됨.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BSE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보고서(2002년4월)”에서는 첫번째는 소비자의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리스크 분석기법의 도입을 제시함. 이 보고 등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행정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 생산단계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성과 식품위생을 관장하는 후생노동성의 제휴가

부족함.

- 전문가와 행정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행정과 과학 사이에 정보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상호신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행정기관의 정확한 정보개시와 투명성 확보가 불충분  
BSE 발생 시 감염 소의 처리정보를 잘못 전달한 것 외에 과거 경위와 정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였음.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도 주의가 부족하였음.
- 정확하고 알기 쉬운 보도 부족  
위험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보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음. 매스미디어 관계자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소비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지원부족  
소비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과 표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관계자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문제점을 발견한 때 통보 등 신속하면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음.
- 2003년7월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어 식품안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이들 새로운 법률체도와 행정조직에 따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도가 설립됨.

(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① 관계 법률의 규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 분석법 도입을 추진하게 됨. 구체적으로는 식품건강영향평가(리스크 평가)의 실시, 식품건강영향평가에 기초한 시책의 책정(리스크 관리), 동법 제13조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이것은 일본 정부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 전체에 걸쳐 적용되게 됨.

- 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제11조(식품건강영향평가 실시), 제12조(국민식생활 등을 고려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시책의 책정), 제13조(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

제11조(식품건강영향평가 실시) 식품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책정함에 있어서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요인이나 상태로서, 식품에 포함되거나 식품이 담겨질 우려가 있는 것이 섭취됨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식품건강영향평가> 라 한다)가 각 시책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당해 시책 내용으로 보아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
  - ②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분명할 때.
  - ③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미리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할 틈이 없을 때.
2. 전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3. 전 2항의 식품건강영향평가는 그 시점에서 도달되어 있는 수준의 과학적 지견에 근거해서, 객관적이고 중립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제12조 (국민식생활 등을 고려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시책의 책정)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식품을 섭취함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상황과 기타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결과에 의거해서 책정되어야 한다.

제13조 (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책 책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되 그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책에 관한 정보제공, 당해 시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부여 기타 관계자 상호간 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또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 및 “관계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에 관한 사무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명기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게 됨.

②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2가지 규정이 마련됨. 한 가지는 규격·기준과 감시지도계획의 책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널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 또 다른 하나는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여 그 시책에 대해서 널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 그 운용은 관계부성의 제휴아래 실시하게 되어 있음.

제64조 후생노동대신은 제6조제2호 단서(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는 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를 하려는 때,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하려고 하는 때, 제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려는 때,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는 때, 제11조제1항(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려는 때,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 밝혀진 물질 또는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양을 정하려는 때, 제18조제1항(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려는 때, 제19조제1항(제62조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기준을 정하려는 때,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 내용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미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 제한은 없다.

- ② 도도부현지사등은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 내용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에 지체 없이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지사 등은 식품위생에 관한 시책에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는 한편 당해 시책에 대해서 널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각 부성의 실시상황

-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이 제휴하여 2003년7월

1일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위원회, 간담회 등의 원칙공개, 식품영향평가와 이에 기초한 관리시책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부터의 의견, 정보의 모집, 의견교환회 등의 개최, 관계자의 상담창구의 설치, 각종 모니터 설치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관계자의 노력에 따라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성 관계 정보의 개시(開示), 설명, 전달 등 정보유통의 면에서는 일정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 ③ 지방공공단체의 실시상황

-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에게 있어 가까운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市町村)에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이 조직 및 협의체 등이 구축되어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참가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 대부분은 각 지자체의 행정, 소비자, 식품관련 사업자, 학식 경험자, 미디어 등 식품의 관계자로 이루어진 협의기관을 설립하여 기본방침과 행동계획 등을 작성하고 개별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것임.
- 각 지자체에서도 농림수산부국, 식품위생부국, 환경부국, 생활환경부국 등의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지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음.
- 그 사례를 살펴보면, 1,200만 도민의 동경도에서는 1990년12월에 “동경도에 있어서 식품안전확보대책에 관련된 기본방침(1999년4월2일 개정)”이 책정되어 “① 도민 의향 시책에 반영 ② 정보의 수집제공과 보급개발 추진 ③ 소비자와 생산·제조자등과의 상호이해 촉진”이 시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됨.
- 이 방침에 따라서 1990년부터 도민의 상담사업 충실, 정보지 “생활 위생” 발행, “생활 위생 세미나” 개최, “음식과 거주지 위생 코너” 개설, “동경도 식품보건 간담회” 설치 등 사업을 전개하고 1997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개시함. 또한 2003년도부터는 ①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 설치 ② 인터넷을 이용한 식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식품안전 Net forum”개설 ③ 많은 도민이 한 장소에 모여 정보교환을 하는 자리로서 “食의 안전도민 포럼” 개최라는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그 외 도부현(道府縣), 시정촌(市町村)에 있어서도 식품안전관계부서간의 연락체제 정비, 관련조례의 제정, 기본방침, 행동계획의 책정, 조사심의기관의 설치, 관계단체와의 연락회의 설치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도 식품안전행정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계속 갖춰지고 있음.

### (3) 식품안전위원회

#### ① 전문조사회 발족

- 2003년7월에 내각부에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수행 이외에 관계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게 됨.
- 이를 위해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해 조사회의를 실시하는 전문조사회를 발족시킴.
- 식품안전위원회는 의견교환회 등을 개최하여 리스크 분석의 견해에 기초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의 기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등 이와 같은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 생산, 유통, 소비, 행정, 전문가 등의 식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당사자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의 소재와 해결방향,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에 보다 노력하여 국가가 이루어야 할 정책 방향 모색에 주력함.
- 구체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양성과 훈련, 소비자와 그 외에 관계자의 질문에 응하는 창구 설치, 행정 각 부문과의 제휴, 문제의 지적과 대책 입안을 위한 관계자의 참여, 정보와 의견 교환 강화, 미디어와의 협력 촉진, 식품의 리스크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를 관계자가 의논하는 기회 마련 등을 목표로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서 식품안전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 다양한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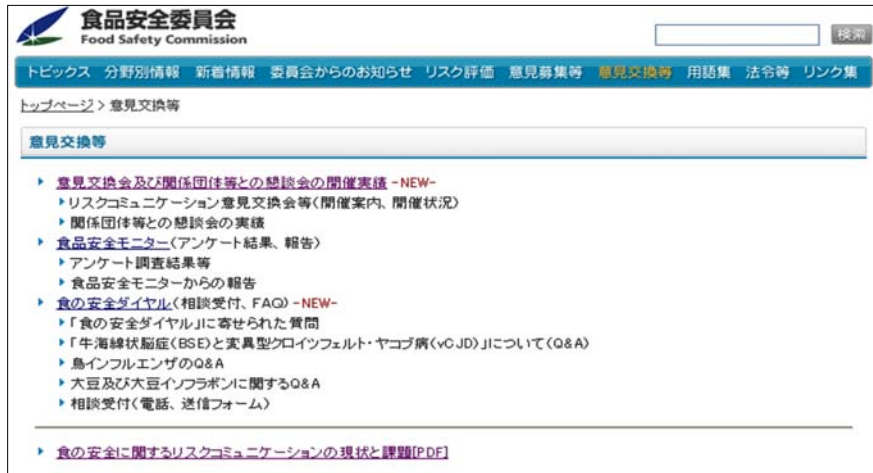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에의 적극적인 참가와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각 전문조사회가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지원, 국내외 실시 사례 조사, 소개 등에 주력하는 것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는 지금까지 반세기간 동안 주로 리스크 개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국가가 새로이 시작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었음. 앞으로는 생산, 유통, 소비, 행정, 전문가등의 관계자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의 소재와 해결방향, 의문점에 대해서 무엇을 리스크로 파악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은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에 주력하여 식품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가 이루어야 할 일의 방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갖고 관계자가 노력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로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제시함.
  - 식품안전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
  - 다양한 의견교환회 등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 회원의 적극적인 참가
  - 행정, 식품관련 사업자, 소비자, 미디어, 교육관계자 등의 관계자 등과 수시로 직접 의견교환을 실시
  - 관계된 전문조사회 등과 제휴하여 관계자간의 의견 차이가 큰 안건(농약, 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에 대해서 관계자의 인지 격차가 큰 분야를 포함), 관계자간에 이해가 부족한 안건 등에 대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계획적으로 실시
  -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소위 “소문피해”의 원인규명과 방지 방법 개발
  - 국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② 식품안전위원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견교환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식품안전모니터”코너에서는 앙케이트 조사결과 및 식품안전 모니터로부터의 보고도 함께 제공함.



<그림 28>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또한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의견교환회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서는 개최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

<p>제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등에 대한 개최 안내 정보를 제공</li> <li>·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목적</li> <li>- 개최일시 및 장소,</li> <li>- 주최기관</li> <li>- 참가자 신청 방법</li> <li>- 의견교환회 테마 등</li> </ul> </li> </ul>
<p>정보 발생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신규 의견교환회 개최 예정시마다 수시 제공</li> </ul>
<p>제공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li> </ul>
<p>제공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그림 29>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등에 대한 개최 결과 정보를 제공</li> <li>·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교환회 주제</li> <li>- 배포자료 : 배포자료를 PDF 화일 형태로 제공</li> <li>- 행정 출석자 : 행정기관 참석자 명단</li> <li>- 의견교환회 의사록</li> <li>- 참고자료 등</li> </ul> </li> </ul>
정보 발생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 신규 의견교환회 개최 예정시마다 수시 제공</li> </ul>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li> </ul>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意見交換等	
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東京)ー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いかに食育に貢献できるかー	
日時:平成18年6月5日(月) 14:00~16:45	
場所:東京厚生年金会館 ロイヤルホール(東京都新宿区新宿5-3-1)	
(1)開会	司会進行:一色 賢司 食品安全委員会事務局次長
(2)開会挨拶	寺田 雅昭 食品安全委員会委員長
(3)講演	導入講演「食育推進基本計画と食の安全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ついて」 坂本 元子 食品安全委員会委員 基調講演「食品の安全と情報/テラシーの向上」 高橋 久仁子 群馬大学教育学部教授
(4)ビデオ上映	食品安全委員会作成ビデオ「別になるモデル水銀ー妊婦中の魚の食べ方ー」
(5)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及び会場参加者との意見交換	コーディネーター:中村 博彦 食品安全委員会委員 パネリスト :神田 敏子 全国消費者団体連絡会事務局長 鈴木 勝士 日本獣医生命科学大学獣医学部教授 高橋 久仁子 群馬大学教育学部教授 福士 千恵子 読売新聞東京本社生活情報部次長 喜国 伸一 (株)NHKエンタープライズエグゼクティブ・プロデューサー
(6)閉会挨拶	寺尾 允男 食品安全委員会委員長代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配布資料</li> <li>▶ 配布資料一覧[PDF]</li> <li>▶ 講演次第[PDF]</li> <li>▶ 講演者プロフィール[PDF]</li> <li>▶ 座席表[PDF]</li> <li>▶ 資料1「食育推進基本計画と食の安全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PDF:1.875KB]</li> <li>▶ 資料2「食品の安全と情報/テラシーの向上」[PDF]</li> <li>▶ 参考資料</li> <li>▶ 参考資料1「みんなで食育 楽しく食育ー食育推進基本計画ができましたー」</li> <li>▶ 参考資料2「みんなで食育 楽しく食育ーみんなが応援する食育推進基本計画ー(子ども向けオリフレット)」</li> <li>▶ 参考資料3「食育基本法についての1QのQ&amp;A」[PDF:1.461KB]</li> <li>▶ 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東京)に参加いただいた皆様へ(アンケート)[PDF] 集計結果[PDF]</li> </ul>	

<그림 30>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③ 식품안전위원회가 제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 식품안전위원회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상황 점검 결과로서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매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 및 방향을 제시함.

① 커뮤니케이션 매체

- 관계자가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견교환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식품안전 모니터의 앙케이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의견교환회 개최를 권장함.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교환도 양방향성을 확보한 정보·의견 교환으로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의견교환회에 출석이 곤란한 원거리 사람들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자와의 양방향성 정보·의견 교환 방법에 대해서도 한층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또한 식품안전위원회의 “食의 안전 다이얼” 등은 주로 관계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상담창구로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어떠한 위해요인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채널로서 이용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함. 특히 교육·의료·복지관계자 등과의 제휴를 견고히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함.

㉞ 의견교환회

- 의견교환회는 새로운 제도의 설명 등 설명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개별, 구체적인 안전에 대하여 의논하는 경우는 전원이 발언·참가할 수 있는 소수의 회합 형태로 실시할 것을 권장함. 또한 과제에 따라서는 전문가, 소비자, 식품관련사업자, 미디어 등으로부터 극히 소수의 사람이 참가하여 집중적으로 의논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함.

㉟ 전문가의 양성과 기술 향상

- 국가를 중심으로 각 관계자는 최신 과학성과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전체적인 향상에 노력할 것을 지적함.
- 전문가 양성 등과 관련한 사례로서, 농림수산성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2002년8월부터 소비·안전국의 간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수와 세미나를 7회 실시함.

㊱ 조사연구의 충실

-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식(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각국의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비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평가방법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의 관계자가 자기 방어할 수 없는 리스크의 존재를 아는 경우 또는 미지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경우,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면서 실증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도 지적함.

㊲ 국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조류 인플루엔자와 미국에서의 BSE 발견과 소고기 수입정지의 사례를 통하여 본 결과 여러 국가와의 적절한 제휴와 대화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적함. 일본에서는 리스크 분석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

견교환을 하면서 국제기관에서의 의논 상황과 타 국가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일본 내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성의 홈페이지 충실과 설명회, 의견교환회의 개최 등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함.

(4)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2003년5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같은 해 8월부터 이를 시행함. 이에 따라 행정담당자, 소비자,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의견교환회의 실시 등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힘쓰고 있음.

① 리스크분석 도입 배경

- 앞서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발생에 따라 설치된 “BSE 문제에 관한 조사 검토위원회” 보고에서 향후 식품안전행정 기본으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의 제정과 조직체제의 정비, 기존 관계법규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리스크 분석법의 채용을 시작으로 한 식품안전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됨.
- 그 후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는 본 보고에 대해서도 검토되어 향후 식품안전행정 기본으로서,
  - i)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분석법을 도입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평가를 하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 ii) 소비자확보를 기본으로 한 포괄적인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관련법에 대해서 개정을 결정함
- 이 결정에 따라 2003년5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 8월부터 시행됨.

## ② 후생노동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후생노동성에서는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과 제휴하여 소비자, 사업자 등 관계자와의 의견교환회 개최와 관계부성에서 실시하는 의견교환회에 참가를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과거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정보제공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과 의견 모집 등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실현에 노력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음.
  - 의견교환회 개최 (관계부성과 공동개최)
  - 정부홍보에 의한 정보 발송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 갱신  
입수 정보가 매우 어렵다는 등의 양케이트 조사 지적 등에 따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톱(top)에 “식품안전정보” 배너를 신설, 페이지의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용, 사업자용 정보의 충실 등 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홈페이지를 목표로 버전 업(version up)함.
  - 기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인 실시  
규제 설정 또는 폐기에 관련된 의견제출 절차(즉 public comment)나 심의회 공개, 정보공개 등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기존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실시.

## ③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운영계획 및 평가

-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운영계획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하고 있음. 2005년도 사업계획 및 그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2006년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의 분야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성”을 주 사업계획으로 수립한 점에 주목할 만함.

2006년도 계획

□ 의견교환회

-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교환회를 개최함.
  - 현지시찰(예 : 검역소)을 포함한 의견교환회
  -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농약 positive list 제도, BSE 관련 문제, 건강식품 등을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와 농림수산성 개최 의견교환회에도 적극적 참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획하는 의견교환회 등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참가하도록 노력함.

□ 홈페이지

- 어린이 대상 사이트의 게재내용 충실을 도모하며, 게재내용을 배우기 쉽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을 도모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 연수

- 현행 연수사업을 활용하여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함.

□ 관계행정기관등과의 제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등과의 교류 촉진

- 관계부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연락회의 (정례) 등을 통하여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추구하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
- 의견교환회 개최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를 추진함.
-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등과 의견교환회와 간담회 등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관계 단체등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노력함.

□ public comment 등 실시

- 규제 설정 또는 폐쇄와 관련한 의견 제출절차(소위 public comment)와 심의회 공개, 정보공개 등을 착실하게 실시함

□ 기타

- 식품안전회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상의하기 위한 기법” 심의 상황을 토대로 필요한 대응을 도모함.
- 학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자료 작성에 노력

&lt;표 4&gt; 후생노동성 2005년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운영계획과 실시결과

사업계획	실시결과
<b>의견교환회 등</b>	
<p>□ 의견교환회에 대해서는 당 성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간 10회~12회 정도를 개최하는 외에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와 농림수산성에 의한 의견교환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함</p> <p>□ 본성에 의한 의견교환회 외에 지방후생국에 의한 의견교환회가 실시될 예정임</p>	<p>· 2005년4월~2006년3월 실적(3월13일 현재) 후생노동성(본성) 기획 의견교환회 등 총 28회</p> <p>· 지방후생국 기획 의견교환회 등 총 6회</p> <p>·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농림수산성 기획 의견교환회 등 총28회</p> <p>(개최 형식)</p> <p>· 소비자, 식품등사업자, 보도관계자, 행정담당자 등 특히 참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참가자를 모집</p> <p>· 모집규모는 대략 200~300인정도</p> <p>· 전반은 테마에 관한 설명, 후반은 패널 토론 및 의견교환으로 하는 형식으로 실시</p> <p>· 기본적으로 테마 설명 전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기초적 설명을 실시</p>
<p>① 기본테마 (전국각지에서 개최)</p> <p>지금까지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의견교환회 설문조사와 식품안전모니터 양케이트 조사(2005년9월)등에 따르면 '잔류농약'과 '수입식품'에 국민의 강한 관심이 집중되며 또한 2006년5월부터는 '잔류농약등에 관한 positive list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수입식품의 안전대책과 잔류농약 등 positive list제도의 도입'을 기본 테마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견교환회를 실시함</p>	<p>총 8회 개최 (예정 포함)</p>
<p>② 개별테마 (각각 1~2회 개최)</p> <p>· 오염물질(수은, 카드뮴)</p> <p>· 식품첨가물</p> <p>·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p>	<p>「임산부에 어패류 섭취와 수은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회」 2회 실시</p> <p>「수입식품의 안전확보에 관한 의견교환회」(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2회 실시</p>
<p>상기 외에 필요에 따라 BSE 문제 등의 테마를 추가하여 실시하기로 함</p>	<p>「미국산 소고기의 리스크 관리조치에 관한 의견교환회」</p> <p>전국 9개소에서 실시</p> <p>「미국 캐나다산 소고기등 대응에 대한 설명회」</p> <p>전국 9개소에서 실시</p>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업계획	실시결과
<b>홈페이지</b>	
1. 현행 홈페이지 게재내용 개선 ○ 가능한 알기 쉬운 게재 내용으로 하는 등 개선을 도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s release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홈페이지에 게재</li> <li>· 필요에 따라 경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페이지 작성(BSE(수입 재개 시))</li> <li>· 필요에 따라 press release와 동시에 Q&amp;A 공표</li> </ul>
2. 「KIDS PAGE」(가칭) 작성 ○ 어린이가 이해하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삽화 등을 이용한 어린이용 식품안전에 관한 홈페이지 작성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페이지 작성 중 (항목 : 식품안전기본, 식중독 예방)</li> </ul>
<b>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성 연수</b>	
1. 도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습득을 목적으로 한 양성연수 실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 식에 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진행 방법에 관한 연구」(후생노동과학연구사업)에 있어 연구반회의에 참가(해외 초빙강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프로그램 실천)(식품안전부 6명)
2. 지방자치단체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 현행 연수사업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기법 등 습득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직원 리스크 분석 연수</li> <li>· 농림수산성이 기획한 연수사업에 참가</li> <li>· 보건의료과학원 식품위생관리코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수</li> <li>·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원(약50인)에 대하여 연수(2일간) 실시</li> </ul>
<b>관계행정기관 등과의 제휴 및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촉진</b>	
1. 관계행정기관과의 제휴 ○ 관계부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연락회의(정례)등을 통하여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부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연락회의(월2회 정도 개최)에 있어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환경성과 의견교환</li> <li>· 각 부성 기획 의견교환회 등 참가</li> </ul>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후생국과의 제휴 ○ 의견교환회 개최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후생국과의 제휴를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기 기획하는 의견교환회 등에 대해서 지방후생국, 지방자치단체의 참획을 받으면서 실시</li> <li>·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심포지엄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참가</li> </ul>



사업계획	실시결과
3. 소비자단체등과의 교류 촉진 ○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등이 실시하는 의견교환회와 간담회 등에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소비자단체와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단체가 기획하는 정보교환에 참가</li> </ul>
<b>public comment 등 실시</b>	
○ 규제 설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절차(소위 'public comment')와 심의회 공개, 정보공개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ublic comment 모집 23건 (2005년4월~2006년2월까지 의견 모집한 건수)</li> <li>·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및 동 각 부회를 원칙 공개로 실시</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플릿 작성을 통한 정보 제공              「가공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표시」 (가공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 소개)              「건강증진법의 식품광고규제」 (허위과대광고 등 금지규정에 대하여 Q&amp;A 형식으로 해설)              「영리하게 선택, 건강 만들기 위한 식품 표시」 (소위 건강식품 표시제도에 대하여 소개)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대처」 (후생노동성 식품안전행정 노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li> <li>· 영상자료 작성</li> </ul>

㉞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현황

- 후생노동성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며 동 메뉴 중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마련하여 후생노동성(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실시상황 등을 제공하고 있음.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리스크コミュニケーション(意見交換会の実施など)**

1. このページについて
 

このページでは、食品安全部で行っている食品の安全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取組についてまとめています。  
「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消費者、事業者、行政担当者との関係者の間で情報や意見をお互いに交換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  
関係者が会場などに集まって行う意見交換会、新たな規制の協定などの際に行う意見聴取(いわゆ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が双方向性のあるものですが、ホームページを通じた情報発信などの一方向性のもので広い意味での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取組に含まれています。
2. 意見交換会
 

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農林水産省など関係機関と連携して、食品安全行政全体をテーマとした意見交換会や、残留農薬のポジティブリストなどの個別課題をテーマとした意見交換会を開催しています。  
[\(意見交換会開催案内\)](#) [開催結果](#)
3. パブリックコメント
 

新たな規制を設けようとして、それまで行っていた規制の内容を改めたり、規制を廃止しようとする場合に意見募集を行っています。  
現在意見募集を行っているものにつきましては、「[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御覧ください。また、政府全体の案件をまとめた「[パブリックコメント・意見募集 募集・結果](#)」のページも併せて御覧ください。
4. ホームページによる情報発信
 

食品の安全に関する取組についてまとめたホームページ「[食品安全情報](#)」により情報発信を行っています。ホームページの内容等について御意見等がございましたら、電子メール：[shokukommunicator@mhlw.go.jp](mailto:shokukommunicator@mhlw.go.jp)又はFAX:03-3503-7965により御意見をお寄せください。
5. 政府広報等による情報発信
 

2003年7月以降、以下のような情報発信を行っています。

  - (1) にっぽんNOW(2003年9月:安全・安心な食生活へ)
  - (2) プラン広報通信(2003年9月:新入食品衛生法がスタート！) [\[pdf\]](#)、[\[html\]](#)
  - (3) 新ニッポン探検隊(日本テレビ:2003年9月7日放送)
  - (4) 時の動き(2003年10月:食の安全と安心の確保に向けて) [\[表紙\(html\)\]](#)、[\[記事\(pdf\)\]](#)
  - (5) Cabernet(2003年10月:安全をつくる、安心を食べる?) [\[表紙\(html\)\]](#)、[\[記事\(html\)\]](#)
  - (6) 新聞広告「突出し広告」(2004年3月:鳥インフルエンザ) [\[html\]](#)
  - (7) 新聞広告「記事下広告」(2004年4月3日:鳥インフルエンザ) [\[html\]](#)
6. 研究会
 

食品の安全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取組には試行錯誤を重ね、改善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厚生労働省では、これまでの取組を検証し、今後の改善点などを検討するため、「食品の安全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を開催し、報告書を取りまとめました。  
また、平成17年3月には、平成17年度の取組み状況を踏まえ、平成18年度の取組みについての検討が行われました。

<그림 31> 일본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후생노동성은 소비자등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견교환회, public comment,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발송, 정부홍보 등에 의한 정보발송, 연구회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의견교환회에 대하여 살펴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견교환회 실시 현황
  -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물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잔류농약 positive list 등의 개별과제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를 실시함.
  - 의견교환회 실시 공지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의견교환회 실시 안내 공지 자료를 통하여 분석함.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잔류농약 positive list 등 개별 과제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를 제공</li> <li>·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목적</li> <li>- 개최일시 및 장소,</li> <li>- 회의내용</li> <li>- 참가자 신청 방법</li> <li>- 의견교환회 언론 공개 여부 : 언론사 신청 방법</li> </ul> </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신규 의견교환회 개최 예정시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 의견교환회 개최결과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의견교환회 개최결과 제공 자료를 통하여 분석함.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잔류농약 positive list 등 개별 과제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정보를 제공</li> <li>·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제공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교환회 주제</li> <li>- 배포자료 : 배포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li> <li>- 행정 출석자 : 행정기관 참석자 명단</li> <li>- 의견교환회 의사록</li> </ul> </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의견교환회 개최 시 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食中毒防止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みんなで、知ろう、減そう、食中毒」に関する産研文協会)の開催(東京都)について	
厚生労働省・関東住居厚生局、農林水産省・関東農政局は、下記のとおり、「みんなで、知ろう、減そう、食中毒」についての意見交換を行うための機会を設け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本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当該案件にお住まいの消費者並びに関係事業者等の方々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ただくことを目的として東京都において開催するものです。	
記	
<b>1 開催日時</b>	
日時	平成18年9月15日(金)13:00～16:30
場所	中央区立中央会館(銀座2丁目) 東京都中央区銀座2-15-6
主催	厚生労働省・関東住居厚生局、農林水産省・関東農政局
共催	東京都(申請中)
参加者	500名程度
申込者	※ <a href="#">リンク先</a> 様式(PDF 677KB)
<b>2 会議内容</b>	
(1) 基調講演	
近畿大学農学部教授 O157知ろう! 減そう! 食中毒	品川 邦夫 先生
(2)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コーディネーター】	
国立農科大学特任教授	中村 裕子 氏
【パネリスト】	
近畿大学農学部教授	品川 邦夫 氏
主 席	田近 秀子 氏
MC(司会者)	山田部 雅嗣 氏
横浜国立大学市民病院感染症部長	稲葉 裕子 氏
社団法人 日本食品衛生協会常務理事	高田 幸 氏

<그림 32> 일본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③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결과 분석

① 사례분석

- 후생노동성 “식(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보고서 (2005년3월)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O157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한 당시 후생성의 대응에 대하여 crisis communication 입장에서 고찰함.
- 사건 개요
  - 1996년 여름 오사카부(大阪府) 사카이시(堺市)에서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건에 관하여 후생성(당시)으로부터 원인 식자재 가능성을 지적받은 무순 생산농가 및 무순협회 등이 “근거 없는 공포에 의해 매상이 격감하였다”고 도쿄와 오사카에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2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4년12월14일에 최고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져 국가의 책임이 확정되기에 이름.
  - 본 건은 실제로 위해가 발생한 후에 있어 정보의 전달(crisis communication)의 기본자세를 묻는 것으로 행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기본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검토 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사례로 판단하여 동 연구회에서는 “crisis communication의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고찰을 실시함.

- 다음은 동 연구회에서 제기된 주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정보공개에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음. 위기상황에서의 신속한 정보제공이라는 기본 방침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crisis management차원에서 crisis communication이 제 몫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였음. 또한 대중매체의 특성 파악과 정부부처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함.

□ 전반적인 고찰

- 결판에 있어서는 공표의 긴급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당시를 되돌아보면 신선식료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한 공표가 강력하게 요구되어 긴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 피해 확대로 인해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 이번 사법재판을 받아 행정의 정보제공에 소극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람.
- 신속한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사건의 경험은 향후 대응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번 사건을 통하여 행정기관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수신자가 무엇을 이미지화 하는지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생각함.

□ crisis communication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고찰

-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 등의 정보공개는 전체적인 crisis management중에서 적절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됨. 즉 crisis를 management 하는 경우 crisis management팀 내에서 전문가를 정리하여 잘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O157 사건의 경우 각각의 전문가는 존재하였지만 이를 정리, 통솔하는 기술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함.
- 보고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문제는 정보의 전달방법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함. 마스크 특성을 파악한 후 발표를 해야 했다고 판단함.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공표 과정에서 마스크의 특성도 고려하여 추론이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는 등 좀더 정중한 준비에 따른 발표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지적함.
  -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본 건의 공표에 있어서 역학적 추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역학적 추론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확률로, 특정 업자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보고서 조사결과는 어디까지나 역학적 추론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했어야만 함.
  - 확률론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철저히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국민을 향한 crisis communication의 기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도 있지만 대신과 같이 영향력이 큰 중요인물에게 올바르게 ‘이해 받는다’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crisis communication에서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대부분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 대한 효과적인 crisis communication도 중요함. 또한 정부 부처간에 어떠한 crisis communication을 하고 있는지 상호 콘텐츠를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㉞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인식변화
- 후생노동성 “식(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의 2005년도 사업평가 자료에 따르면, 의견교환회나 설명회 등 참가 후 참가자의 인식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견교환회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소비자 등 관계자의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불안감 등을 갖는 소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함.
  - 의견교환 후 참가자의 인식변화 예는 다음 표와 같음.

&lt;표 5&gt; 수입식품 안전대책 관련 의견교환회 참가 후 인식변화

의견교환회 참가 전		의견교환회 참가 후	
안심하고 있었음	140 (16.1%)	안심감이 커짐	56 (40.0%)
		변화 없음	81 (57.9%)
		불안감이 커짐	0 (0.0%)
		무응답	3 (2.1%)
뭐라 말할 수 없음	543 (62.3%)	안심감이 커짐	98 (18.0%)
		변화 없음	414 (76.2%)
		불안감이 커짐	11 (2.0%)
		무응답	20 (3.7%)
불안하였다	189 (21.7%)	안심감이 커짐	45 (23.8%)
		변화 없음	102 (54.0%)
		불안감이 커짐	33 (17.5%)
		무응답	9 (4.8%)

&lt;표 6&gt; 잔류농약 등 positive list제도 관련 의견교환회 참가 후 인식변화

의견교환회 참가 전		의견교환회 참가 후	
안심하고 있었음	136 (15.7%)	안심감이 커짐	71 (52.2%)
		변화 없음	52 (38.2%)
		불안감이 커짐	4 (2.9%)
		무응답	9 (6.6%)
뭐라 말할 수 없음	543 (62.8%)	안심감이 커짐	118 (21.7%)
		변화 없음	393 (72.4%)
		불안감이 커짐	23 (4.2%)
		무응답	9 (1.7%)
불안하였다	185 (21.4%)	안심감이 커짐	26 (14.1%)
		변화 없음	101 (54.6%)
		불안감이 커짐	51 (27.6%)
		무응답	7 (3.8%)

(5) 농림수산성

-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소비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심의회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 농림수산대신과 소비자 등의 관계자와의 의견교환회, 간담회 개최
  - 지방 농정국에 있어서 의견교환회 등의 프로그램 실시
  - 홈페이지나 메일 매거진을 통한 정보 제공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은 총무과, 소비·안전정책과, 국제기준과, 표시·규격과, 농산안전관리과, 축수산안전관리과, 동물위생과, 식물방역과, 소비자정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소비자담당관”임. 소비자담당관의 주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획반 : 기획, 조정, 서무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
  - 소비자 상담반 : 소비자상담실, ‘소비자의 방’ 기획·운영
  - 식육(食育)추진반 : 식육 추진, 식생활 지침·식사밸런스 가이드 보급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농장부터 식탁까지 리스크 관리의 철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식품표시의 적정화로 소비자에 올바른 정보의 전달·제공
  - 가축과 농작물의 질병이나 해충의 만연 방지에 의한 식품의 안전 공급
  - 소비자를 시작으로 한 관계자와의 정보·의견 교환과 시책 반영
  - 바람직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식육(食育)의 추진
- ①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 후생노동성과 같이 의견교환회, 소비자등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그 외에 인터넷 앙케이트 조사인 안전·안심 모니터조사, 식료품 소비모니터 조사결과 등을 제공함.





<그림 33> 일본 농림수산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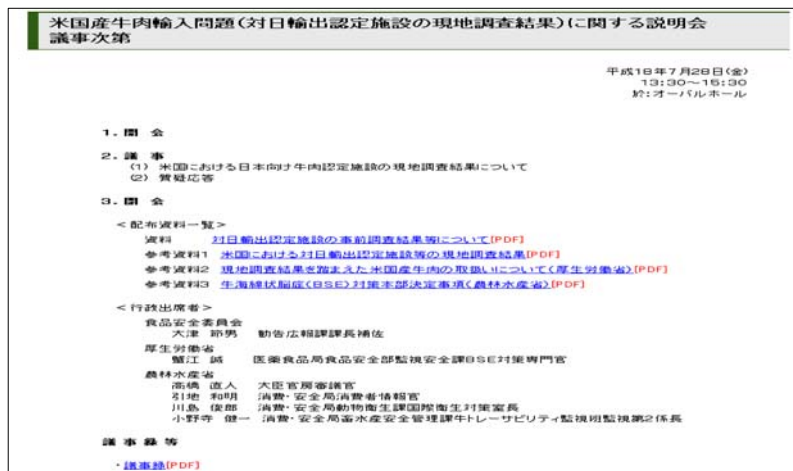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견교환회 실시 현황
  - 의견교환회 실시 공지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의견교환회 실시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성에 관한 의견교환회(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와 “기타 테마에 관한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를 제공</li> <li>· 의견교환회 개최 공고 제공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li> <li>- 개최일시 및 장소</li> <li>- 주최기관</li> <li>- 참석 행정기관</li> <li>- 참석자 신청방법</li> </ul> </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의견교환회 개최 시 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사업자 등 관계자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 의견교환회 개최결과 제공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의견교환회 실시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성에 관한 의견교환회(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와 “기타 테마에 관한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정보를 제공</li> <li>·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제공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교환회 주제</li> <li>- 배포자료 : 배포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li> <li>- 행정 출석자 : 행정기관 참석자 명단</li> <li>- 의견교환회 의사록</li> </ul> </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의견교환회 개최 시 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사업자 등 관계자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그림 34> 일본 농림수산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②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평가 사례

-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수산성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제공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안심 모니터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함.
- 2005년11월 “식품의 안전성과 행정의 정보제공에 대한 의식파악”을 목적으로 안전·안심 모니터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행정기관이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4%,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다’46%,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2%,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3%임.
- 또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사업에서 향후 계속 진행하였으면 바라는 것은 ‘기자 발표에 의한 신문·텔레비전 등 보도를 통한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73%, ‘의견교환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38%, ‘웹 사이트 충실’ 53%, ‘메일 매거진 발송’ 23%, ‘팸플릿이나 홍보잡지 충실’ 43%, ‘소비자 상담창구 설치’ 42% 이었음.
- 또한 2005년8월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교환회에 대한 인상과 요구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안전·안심 모니터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교환회에 관하여 참가 경험 유무를 질문하였더니 ‘참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12%, ‘흥미는 있지만 참가경험이 없다’70%, ‘흥미가 없어 참가경험이 없다’ 18% 이었음.
  - 의견교환회에 대한 이미지로서 ‘지식이 없으면 질문과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65%, ‘행정기관이나 전문가가 질문에 답해준다’36%, ‘식품안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참가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32% 이었음.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식품안전에 관한 행사 중 어떠한 행사라면 참가하겠느냐는 질문에 ‘식품안전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행사’이라는 응답이 76%, ‘부담 없이 질문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행사’ 55%, ‘전문적인 논의를 들을 수 있는 행사’23% 이었음.

(6) 식품 이외 분야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현황

- ① 원자력 분야
- ② 실시 목적 및 배경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국민과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로도 포함.
- ② 실시주최 : 원자력안전위원회
- ③ 실시 방법
  - 국민과의 직접 대화의 장 활용
    - 지방 원자력안전 심포지엄
    - 공개청취, 공개토론회
    - 안전 목표에 관한 패널 토론회
    - HLW 안전조사 워크숍 개최
    - 방사선영향에 관한 토론회
  - public comment
    - 우라늄·플라토늄 혼합산화물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가상적인 임계사고 평가에 대하여
    - 사용제 연료 중간저장시설에 있어 금속제 건식 카스구와 그 수용물의 장기 건전성에 대하여
    - 안전심사지침의 체계화에 대하여
    - 1차 행정청으로부터의 자문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답신에 대한 의견모집
    - 고수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개요 조사 지구선정단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환경요건에 대해서
    - 핵연료 사용시설(조사제 연료 및 재료 취급시설)에 있어 clearance level에 대하여
  - 원자력안전위원회 HP 등에서의 정보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 심사 지침류
    - 원자력안전백서
    - 지방원자력안전심포지엄 관련자료
    - 정책평가서

## ② 화학물질 분야

## ① 실시 목적·배경

-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에 관한 법률(PRTR법)’ 제정(1999년)에 있어 환경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기본계획(2000년 재평가)에 따라 추진함.
- 2001년2월에는 ‘21세기 “환경국가”만들기 회의’가 내각총리대신 주관으로 개최됨.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기업, 행정 등 책무에 대하여 논의됨. 그 중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리스크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가에 의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됨.

## ② 실시주최 : 환경성, 일본화학회, 일본화학공업협회

## ③ 실시 방법

- 환경성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폭로에 관한 정보 충실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국민에 대한 제공 (데이터베이스 정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양성(지자체직원용 ‘화학물질 행정연수’)
  - PRTR정보 공표
  - 홍보활동과 환경교육 추진 (사례수집, ‘PRTR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기 위한 시민 가이드라인’ 작성)
- 일본화학회 (사업자)
  - 화학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검토위원회 시작 (1997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사업자용, 행정용, 시민단체용 등) 작성)
- 일본화학공업협회 (사업자)
  - ‘사업자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검토
  - 1997년판 사업자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작성·검토
  - 1999년도판 가이드(신판) (범용성 높은 사업자용 가이드로 개정)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성 연수강좌 실시 (1999년11월, 2000년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2월)

-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를 비롯하여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조직(기구 또는 팀 등) 및 인력을 설치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간 사업계획 및 실시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며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배포 자료, 회의록 공개 등 일체)를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제공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요 요소로 간주하여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함.

## 나. 유럽연합

### (1)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계(RASFF)

- 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이하 RASFF)는 “General Food Law EC No 178/2002”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유럽회원국(EU + EFTA/EEA), 집행위원회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설립됨.
- RASFF체계에 따라 각 회원국은 식품 및 사료로 인한 인체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입수 시 즉시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집행위원회는 다시 다른 유럽 회원국에 송부하여 회원국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또한 집행위원회는 동 결과를 정리하여 매주 홈페이지에 공개함.
- 다른 법률을 침범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회원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즉시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 또는 사료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거나, 철회·회수 등의 조치
  -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식품 또는 사료를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특정 조치를 강요하는 모든 권고사항 및 협의
  - 유럽연합으로 수입 시 인체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수입거부
- 동 보고서는 2005년도에 RASFF에 보고된 정보들, 특히 통보건수, 통보국가, 관련국가, 제품 및 관련 위해요인 등을 정리한 것임. 동 보고서에서 통보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국가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혼동할 수 있으나, 통보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회원국간 정보교환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함. 또한 제3국과 관련된 통보건수와 회원국에서 통보된 건수와 비교해서는 안되는데, 제3국의 경우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당시에만 통보되지만, 유럽국 안에서는 전체의 유통체계에 관련된 모든 것이 통보되기 때문임.
- RASFF안의 정보들은 경계통보(Alert Notification)와 정보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로 구분됨.

RASFF 정보 구분

**경계통보(Alert notification)**

- 경계통보는 위해한 식품 및 사료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어 회수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는 회원국이 문제를 발견하고 철수/회수 등 관련조치를 시작할 때 통보됨. 이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회원국들이 관련된 제품이 자국의 시장으로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경계 통보된 대상 제품은 철수되거나 철수 중에 있게 됨. 회원국들은 필요한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자국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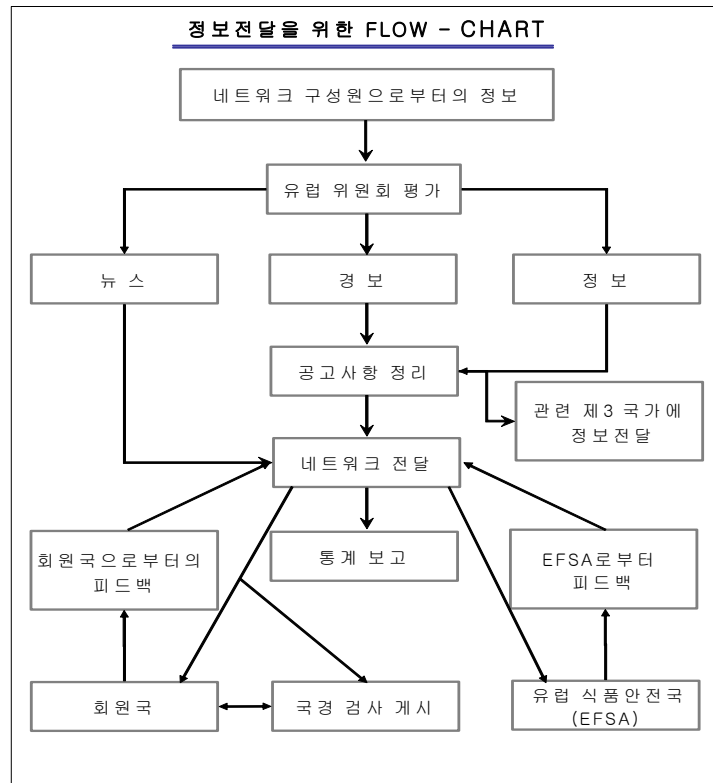
**정보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

- 정보통보는 위해가 되는 식품이 아직 시장에 판매되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대개 수입당시에 검사되어 수입 거부된 식품 및 사료임.
- 정보 통보된 대상 제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상태임
- 두 가지 통보 모두 제품의 원산지, 추가 분석결과, 관련된 서류들, 조치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후속통보가 보내짐. 이들 후속통보는 “추가 정보통보 (additional information notification)”로 분류되어 관리됨.

**참고통보(News Notifications)**

- “경계통보”나 “정보통보”로 회원국에 의해 교환되지 않은 식품 또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모든 정보는 회원국에서 식품/사료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통보”로 제공될 수 있음.
- RASFF 체계에 통보되더라도 집행위원회가 정한 통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RASFF에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런 경우 통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되도록 추가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반대로 통보한 국가에서 정보가 근거가 없거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된 사항을 철회할 수도 있음.





<그림 35> EU의 RASFF 정보전달 흐름도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The legal basis of the system is Regulation (EC) No 178/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OJ No L 31 of 1 February 2002).

The purpose of 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is to provide the control authorities with an effective tool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ensure food safety.

To assist the members of the network, information is classified under two different headings:

- ALERT NOTIFICATIONS**

Alert notifications are sent when the food or feed presenting the risk is on the market and when immediate action is required. Alerts are triggered by the Member State that detects the problem and has initiated the relevant measures, such as withdrawal/recall. The notification aims at giving all the members of the network the information to verify whether the concerned product is on their market, so that they also can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ubject to an alert notification have been issued from the market, the Member States have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food safety.

Each a risk has been identified, but for which no immediate action, because the product has concern food and feed consignments that have EU.

Subject to an information notification have not been issued from the market, the Member States have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food safety.

**Week 20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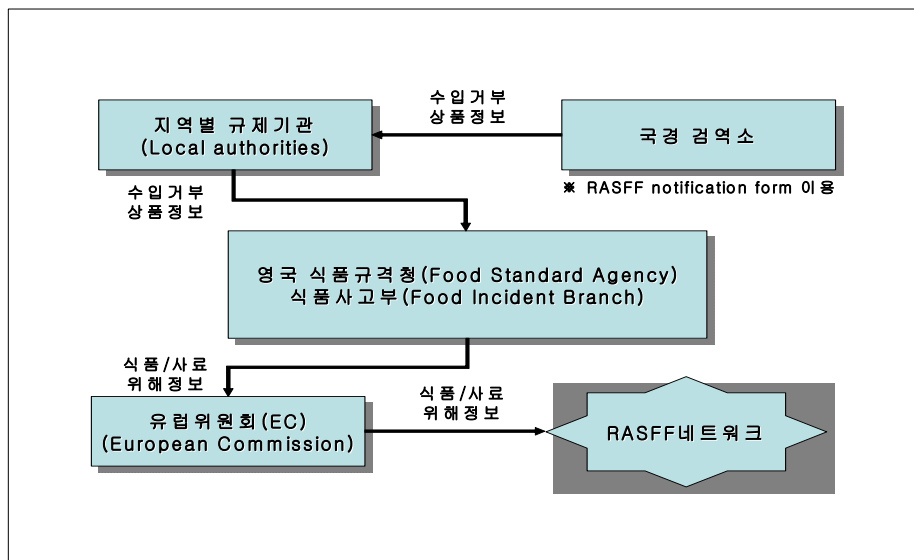
**TABLE 1: ALERT NOTIFICATIONS**  
Notifications in blue typeface concern feed, all other notifications concern food.

DATE	NOTIFIED BY:	REF.:	REASON FOR NOTIFYING:	COUNTRY OF ORIGIN:
03/04/2006	Finland	2006.0220	aflatoxins in natural shelled and diced almonds	SPAIN
04/04/2006	Italy	2006.0221	mercury in entire chilled swordfish	GREECE
04/04/2006	Belgium	2006.0222	semicarbazide (SEM) in baby foods	FRANCE
04/04/2006	United Kingdom	2006.0223	foreign body in orange juice	GERMANY
04/04/2006	Germany	2006.0224	benzo(a)pyrene and benzo(b)fluoranthene in vegetable oil	LATVIA
04/04/2006	Greece	2006.0225	suspicion of illegal trade of frozen beef meat	IRELAND VIA THE NETHERLANDS
05/04/2006	Germany	2006.0226	carbon monoxide treatment of deep-frozen meat	IRELAND VIA THE NETHERLANDS VIA BELGIUM
05/04/2006	Italy	2006.0227	Salmonella anatum and Salmonella Derby in frozen pig meat preparations	SPAIN
05/04/2006	Denmark	2006.0228	Salmonella cubana in soy protein powder	DENMARK
05/04/2006	Germany	2006.0229	benzo(a)pyrene and benzo(b)fluoranthene in ground wheat in oil	ESTONIA
05/04/2006	Germany	2006.0230	migration of cadmium and of lead from drinking glass	GERMANY
06/04/2006	Finland	2006.0231	aflatoxins in almonds crushed and brown	SPAIN VIA SWEDEN
06/04/2006	The Netherlands	2006.0232	carbendazim in parsley	THAILAND
07/04/2006	Estonia	2006.0233	too high content of E 300 - sorbic acid in dried black currants	BULGARIA VIA LITHUANIA
07/04/2006	Denmark	2006.0234	insufficient labelling of frozen prepared pasta dish with spinach and ham	BELGIUM
07/04/2006	Estonia	2006.0235	too high content of sulphates in dried peas	CHINA VIA LATVIA
07/04/2006	Germany	2006.0236	norovirus in oysters (Ostrea spp.)	FRANCE
07/04/2006	France	2006.0237	Salmonella in kebabs of turkey and veal	GERMANY
07/04/2006	United Kingdom	2006.0238	dicoum in fish oil capsules	SWITZERLAND

<그림 36> EU의 RASFF Weekly Overview Archive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영국의 경우 모든 지역 행정기관(검역소)은 보건의 직·간접적인 위험을 갖는 모든 수입 거부상품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RASFF 통지서식을 이용하여 지역별 행정기관을 경유, 식품규격청(Food Standard Agency)의 식품사고부(Food Incident Branch)에 제공함. 식품규격청 식품사고부는 이러한 위해정보를 유럽 위원회에 발송하며 유럽위원회는 RASFF 흐름도와 같이 RASFF 네트워크 구성 원에게 전달함



<그림 37> 영국의 RASFF 체계

(2) 영국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영국은 BSE(광우병) 문제 등으로 실추된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2000년에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이라는 국가조직을 새로 설치함.
- 동 조직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담당함. FSA는 ① 소비자를 제일로 생각할 것 ②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기관이 될 것 ③ 독립된 목소리를 가진 기관이 될 것 등 3가지를 조직의 기본이념으로 함.
- 상기와 같은 기본 이념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함. 또한 위원장 Sir John Krebs는

2002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함.

- FSA 공개위원회 공개 : 식품, 위생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실시에 대해 검토하는 등 위원회는 제한 없이 사전 신청으로 방청 가능하며 또한 웹 사이트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를 중계함.
- 홈페이지 :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정리·제공함. 위생, 식품표시, 안전한 조리방법 등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가 총 망라되어 있음. 매월 130건 이상의 질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며 이에 대해 각 전문가들이 최신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회답함.
- 상기와 같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시도 결과,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FSA의 신뢰성이 향상됨.

## 다. 미국

- 위험정보 공개의 선진국인 미국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점을 일찍부터 깨닫고 사회 과학, 자연 과학의 전문가 이외에 연방, 지방의 의지 결정 기관, 산업계, 매스컴, 환경 단체 등의 관계자를 모아서 리스크 정보 전달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검토함. 그 결과 과거의 리스크 정보 전달은 전문가로부터 비전문가로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이해되어 정보 발신자의 의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현재는 관계자간에 리스크에 관한 정보(유리한 정보, 불리한 정보 포함)를 교환,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리스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물리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음.

### (1)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미 FDA의 홈페이지 메뉴 조사 결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코너를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함.
- 그러나, JIFSAN(The Joint Institute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은 1996년 4월 FDA와 University of Maryland (UM)가 협력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에 관한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
- 한편 FDA는 수산물, 과일, 야채, 그리고 고기 및 가금류, 알류가 아닌 제품 (Seafood, Fruit, Vegetables, & other Non-Meat Food Products)에 한하여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FDA's Consumer Complaint Coordinators(소비자 불만 사항 조정자)와 바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짐.
- 그 외에 기타 관련 규정이나 규칙에 관한 사항은 FDA Dockets Management Comment Online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p>제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Vaccines), 수혈, 동물사료, 화장품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여러 규칙들의 협의 사항(Dockets)을 웹 페이지에 10-60일간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받음</li> <li>· 공개되는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Docket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사항 번호 &amp; 주제(Docket Number &amp; Title)</li> <li>- 관련 법령(Action)</li> <li>- 의견 수렴 기간(Comment Period End Date)</li> <li>- 내용 요약(Summary) 혹은 Keyword</li> <li>- 협의 사항의 전문(pdf 파일로 첨부) 제공</li> </ul> </li> </ul>
<p>정보 발생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보통 10-60일간 웹 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시로 받음</li> </ul>
<p>제공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li> </ul>
<p>제공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비공개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Docket ID	Title	Published Date	Comment Period Ends	Submit Comment
2006N-0027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roposed Collection; Comment Request; Product Jurisdiction; Assignment of Agency Component for Review of Premarket Applications	06/21/06	08/21/06	<a href="#">Go</a>
2006N-0029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roposed Collection; Comment Request; Infectious Disease Issues in Xenotransplantation	06/21/06	08/21/06	<a href="#">Go</a>
2006D-0191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uidance for the Use of Bayesian Statistics in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s; Availability	05/22/06	08/21/06	<a href="#">Go</a>
2004E-0413	Determination of Regulatory Review Period for Purposes of Patent Extension; OASIS	06/21/06	08/21/06	<a href="#">Go</a>
2004E-0444	Determination of Regulatory Review Period for Purposes of Patent Extension; BORNIA	06/21/06	08/21/06	<a href="#">Go</a>
2006P-0055	ANDA Subability for Calcitriol	06/22/06	08/21/06	<a href="#">Go</a>
2006P-0054	513(b) Petition for the SCRAM Bracelet (and Collectively, the SCRAM System) as a Class I Medical Device	01/25/06	08/23/06	<a href="#">Go</a>
2006D-0064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Staff; Class II Special Controls Guidance Document; RNA Preanalytical Systems (RNA Collection, Stabilization, and Purification Systems for RT-PCR used in Molecular Diagnostic Testing); Availability	08/24/05	09/24/06	<a href="#">Go</a>
2006P-0067	ANDA Subability for Deslorazepam	06/26/06	08/25/06	<a href="#">Go</a>

**Docket Information**

**Docket Number & Title:** 2006N-0029 -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roposed Collection; Comment Request; Infectious Disease Issues in Xenotransplantation

**FR Type:** Notice

**Action:** Paperwork Reduction Act (PRA) 60-Day

**Comment Period End Date:** 08/21/06

**Summar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s announcing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on the proposed collection of certain information by the agency.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the PRA), Federal agencies are required to publis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concerning each proposed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each proposed extension of an existing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to allow 60 days for public comment in response to the notice. This notice solicits comments on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PHS) guideline entitled PHS Guideline on Infectious Disease Issues in Xenotransplantation dated January 19, 2001.

[View FR Document for this Docket](#)

<그림 38> 미국 FDA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2) 농무부(USDA)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USDA 또한 별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지는 아니함.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농축산물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축산물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있음. 농무부 홈페이지 “Food Safety” 코너에서는 식품의 취급, 회수, 방사선조사, 식인성 질병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USDA는 안전에 관한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USDA Meat & Poultry Hotline과 바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며, 기타 각종 협의 사항, 규정, 회수(Recall) 등에서 식품 안전(Food Safety)에 관한 사항은 모두 "Ask Karen"에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 연구원을 캐릭터로 한 식품 안전, 위생에 관한 모든 질문에 자동 응답하는 시스템(automated response system)</li> <li>· Ask Karen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하는 방법(Asking Questions)</li> <li>- 질문의 예시(Sample Questions)</li> <li>- 질문의 종류(Question Categories): 고기, 가금류 및 알류에 관한 안전성, 제조, 식인성 질환 예방 등에 관한 모든 질문을 다루며, 특히 식품첨가물, 쇠고기, 돼지고기, 알레르기, 햄, 닭, 환경호르몬물질, 냉동, 냉장 방법 등 약 108개의 질문 분류체계가 있음</li> <li>- USDA Meat &amp; Poultry Hotline과의 연결방법</li> </ul> </li> </ul>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자동화된 응답시스템으로 수시로 update함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li> <li>· 웹 페이지(html) 형태</li> </ul>



<그림 39> 미국 USDA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한편 USDA는 “USDA Employee Services”에 “Communication, Communicating for Results” 과정을 두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명확하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들을 교육하며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음.

-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Barriers (커뮤니케이션의 장벽)
-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 Listening (듣는 커뮤니케이션)

(과거 2001년에는 Risk Communication & public involvement 과정을 운영하였음)



<그림 40> 미국 USDA Employee Services

### 3. 국내 현황 문제점

#### 가. 전담 조직 부재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험정보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위해정보팀(9명)”을 마련하였으나 농림부는 이에 해당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없음.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에서 농산물 등과 관련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은 타 업무와 겸직 상태임.
- 결국 전담조직 및 인력의 부재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은 원활히 수행하기에 곤란함.

#### 나. 타 부처와의 제휴 EH는 협조체계 부족

-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가적 또는 총체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임.
- 그러나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한 몇 가지 사건(예 : 수산물에서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부처간의 책임 전가 및 정보교류 부족, 협조체계 미비로 관련 사건의 해결 및 대응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충분치 못하였음.

#### 다. 정보 공유 부족

- 농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림부 내부 및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함. 이러한 협조체계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나 아직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지 못하였음.
- 특히 유해물질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는 식품사고의 효과적 대처뿐만 아니라 국가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 타 국가와의 유해물질 협력·협상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임. 그러나 이들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설정에 관여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과 위해평가 정보, 연구조사 결과, 모니터링 결과, 지도·점검 등과 같은 상시 정보의 교환·교류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지도·점검 결과의 발표, 법령개정시의 입법에



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 전담인력, 전담조직, 타 기관과의 제휴 등을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7>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현황 비교

	한 국	일 본
전담조직	식약청 : 위해정보팀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농림부 : 없음(소비안전과 담당)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소비자담당관
전문인력	식약청 및 농림부 모두 별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음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간 사업계획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성 연수”가 주 사업내용으로 포함
타 부처와 제휴	기관 단독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나 식약청·농림부 공동 주최의 활동은 전무함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 공동 주최 의견교환회 등 실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 의견교환회 등 실시
	식품 등의 리스크 및 안전 사건·사고 발생시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미비	식품안전위원회이 관계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조정을 실시 → 부처간 제휴 실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처리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관련 자료(배포자료) 일부 제공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모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관련자료 일체(배포자료, 회의록,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 등)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라. 정보 관리 체계 미흡

- 농식품 등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안전관리에 관련한 농림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의 업무를 통하여 생성되는 기본 정보의 관리 및 축적을 평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05년도부터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처 내 생성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일상 정보 외에 위기 상황 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보교환, 정보 확산·배포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부족함.

## 마. 정보 제공기법 미숙

- 위험정보의 제공에 관련된 문제점은 농식품의 안전정보 제공에 국한된 것은 아님.
- 그동안 위험정보 제공 방식이나 기법은 식품안전 문제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관련 행정 당국과 전문가들은 관련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과 피해발생 가능성에 근거하여 국민을 설득, 안심시키려 함. 즉 정보를 제공받는 상대인 소비자의 수준, 소비자의 인식·편견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만을 전하여 소비자 불안 및 사회적 문제의 진정 및 해결이 어려움.
- 리스크와 같이 전문적인 사안을 다룰 때 전문가 집단이 전문정보나 과학적 데이터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전문가이면서 대중심리를 갖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이해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차치하고 소비자의 의견 청취와 같은 양자간 대화의 시작도 어려움. 일반인들은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기준보다 과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즉 리스크를 판단할 때 사회적 가치관이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 결국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또는 관계자들이 리스크에 대하여 같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홍보 하는 것 외에 일반인들을 초기부터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여

주려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제3장

결 론

제1절.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농식품 위험정보 교류(risk communication) 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체계 구축의 목적 설정 및 필요성 인식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 설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에 대한 부분 각각을 요약 정리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적
  - 농식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 농식품 안전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 농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의 건강과 안심 확보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표 등 설정
  -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평가자, 특히 리스크 커뮤니케이터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모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해관계자(stakeholder :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등)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증진이지만 최우선적으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단방향(one-way)이 아닌 쌍방향(two-way)성이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식품안

전관리 및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관계자뿐만 아니라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 관계자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2. 전담조직 신설

- 농림부는 농림부에 관련된 농식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농식품관련 위험정보의 수집·관리·분석·공유 등을 포함)을 전담하는 조직을 “과” 규모로 별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은 수행할 기능과 업무에 부합되는 부서명을 부여하여 부내 및 타 부처, 소비자 등이 인식하기 좋게 하여야 함.
  - ※ 예 1 ; “농식품안전정보교류과”(가칭) 또는 “농식품안전정보 및 커뮤니케이션과”(가칭)
  - ※ 예 2 ; “안전정보교류과”(가칭) 또는 “안전커뮤니케이션과”(가칭)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는 농식품 관련 위험정보(또는 안전정보)의 체계적 수집·분석·활용 부분을 포함시켜 아래와 같이 2가지 큰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 농식품 안전(위험)정보 관리
  -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농식품안전(위험)정보 관리
    - 부 및 소속·산하기관 안전(위험)정보의 수집, 분석
    - 타 부처 안전(위험)정보의 수집, 분석
    - 해외 안전(위험)정보의 수집, 분석
    - 안전(위험)정보의 분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긴급성 또는 경고성 안전(위험)정보의 배포
    - 안전(위험)정보 시스템의 관리·운영
    - 기타 안전(위험)정보 분류, 수집, 분석 및 배포 관련 사항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총괄기획 및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 소속·산하기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조정 및 지원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정 설정(제정)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풀 관리
  - 기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
- 농식품 등의 긴급 위험 상황 시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 구성원의 역할 등을 사전에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립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총괄 지휘
  -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 대책본부와 농림부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 연락 등을 총괄
- 정보수집 담당
  -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의 사고대책본부 파견과 정확한 정보 수집
  -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위험 상황과 관련한 루머나 잘못된 정보 등을 조기에 파악
- 신속대응 커뮤니케이션 담당
  - 대언론 업무 중 농식품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
  - 위기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기자회견, 홍보물 제작의 배포, 인터넷 정보제공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신속 제공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이 주축이 되어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

## ○ 대변인

- 대언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농림부 입장과 조치, 관련 정보와 사실 제공
- 대변인의 부재와 사고 시에 대비하여 최소 2인 이상의 대변인 필요 (예 : 차관, 담당 국장 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 위기 상황별로 적합한 대변인 선임 가능. 즉, 위기상황의 종류에 따라 농산물유통국장, 축산국장 등 담당 국장을 대변인으로 선임 가능
  - 통상적으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차관을 대변인으로 공동 선임
  -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전문가 투입을 지양

&lt;표 8&gt; 농식품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대변인의 선임

위험종류	대변인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가 아님	농림부 차관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공동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	농림부 차관과 담당 국장 등
인명피해와 관련되지 않은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가 아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인명피해와 관련되지 않은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	담당 국장 등

- 커뮤니케이터(대변인)는 아래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
  - 진실한 자세
  -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 및 전달할 것
  - 주의 깊게 듣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것
  -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할 것
  -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친근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상을 연출할 것
  - 연민과 인내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 코멘트”라고 말하지 않도록 할 것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실수나 잘못된 정보를 즉시 바로잡을 것
- 농식품 안전관련 사건·사고 시 통상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일차적 자료 또는 정보 수집·분석을 하며,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게 됨. 따라서 농식품 안전 관련 사건·사고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할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 대국민 홍보 등을 수행하는 리스크 관리부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부서와 연계되어야 함. 특히 발표용 콘텐츠 즉, 발표 자료의 구성이나 작성 시에 연계가 있어야 함.
  - ※ 대 언론 접촉 시 주의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음.
    -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대응할 것.
    - 대 언론 접촉 창구는 한 곳으로 한정할 것.
    - 대중매체와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 유지할 것. 또한 평소부터 정기적인 기자 회견 등을 실시, 사소한 사항도 공개하여 정보를 은폐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하여 농식품 안전관련 사건·사고 즉, 위기상황을 대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요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은 상기 주요 업무의 기반 구축 또는 실시를 본격화하기 전에 이해증진 또는 실질적 경험 축적을 위해서 단위 사업 또는 업무를 우선 수행한다면 농식품안전(위험)정보 관리 분야는 “안전(위해)정보의 분류체계” 확립,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 분야는 여러 분야의 리스크에 대하여 각 분야(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 정보 교류회” 연중 개최가 시행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성의 확보에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구성 예

1. 개요
  - 1) 매뉴얼 목적
  - 2) 리스크 정의
  -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표
  - 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조직
    - 조직의 구성
    - 주요 업무 및 기능
  - 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주요 활동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조치 및 절차
  - 1) 리스크 판단
  -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대상 판단
  -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전략
    - 기본원칙
    - 관리대상별 커뮤니케이션 원칙과 적용 전략
      - 비언론대상 전략
      - 언론대상 전략
    - ※예; 언론대응 일반원칙과 전략 / 인터뷰, 기자회견, 브리핑 등 대 언론전략 실행 / 매체별 전략 특성
  - 리스크 상황별 대응 절차
3. 후속조치 및 기타
  -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결과 평가 및 공표
    - 평가 절차 및 평가방법
    - 공표 절차 및 방법
  - 2) 매뉴얼 점검 및 수정보완
  - 3) 매뉴얼 교육 및 워크숍

- 또한 전담 조직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확보도 검토하여야 함.
- 특히 현재와 같이 농식품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터 지도·양성 인력 확보 또한 절실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래의 예시를 고려할 수 있음.

- 타 부처와의 제휴에 의한 인력 양성 : 리스크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진행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NSC), 소방방재청 등 국내 비식품 분야의 정부기관과 제휴에 의한 인력 확보
- 해외 기관과의 제휴 등 : 일본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휴, 일본 환경성 ‘리스크 커뮤니케이터’인증제도 도입 또는 활용

### 3. 전문인력 양성

- 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 양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확보 또는 양성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중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교육기관 연수도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 내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여야 함.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관련 제도는 아래와 같음.
    - 미국 : USDA Employee Services의 “Communication, Communicating for Results”
    - 일본 :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국내 : 항공분야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및 PR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일본 : “Nonprofit Organization The Sanitation Designer Society of Japan”의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 일본 : 환경성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인증제도 (2010년까지 설립 예정)
- 또한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조직에도 리스크 커뮤니케이터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리스크 분석에 효율적임. 따라서 리스크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협의, 토론, 정보 공유를 할 리스크 평가자 및 리스크 관리자에게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 원칙, 스킬(skill) 등을 습득케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기 교육·훈련 시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 양측 모두의 훈련이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 제공측에 대해서는 상대의 입장에 서서 고려한다는 기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보전달 기법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에 필요로 하는 능력은 크게 리스크라고 하는 “확률사상의 전달” 어려움을 이해하는 능력과 “정보전달 능력”임.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지식과 능력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에게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기회 제공이 있어야 함. 아울러 이들 훈련과 함께 실천경험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중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후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 대외 발송 정보의 내용과 정보전달의 기법 등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뿐만이 아니라 양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약할 수 있는 규범(또는 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 4. 정보관리

-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되는 안전(위험)정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즉,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위험)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립·분석·활용되어야 하므로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의 안전(위험)정보 흐름(정보 생성, 정보 취합 등)을 파악하고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위험)정보 그룹화(grouping)가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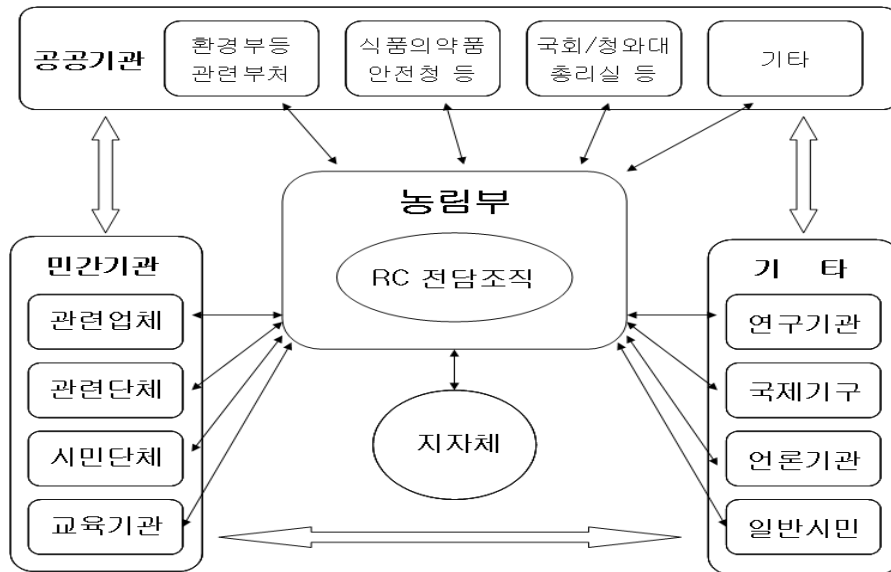
- 현재 농림부는 2005년도부터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중 이므로 동 시스템의 연계, 활용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위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위험)정보 분류”는 다음 구성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정보명(또는 제목)
  - 정보 내용
  - 정보 요약
  - 정보 종류
    - ※ 필요시 세부종류까지 확대 가능
  - 정보 발생처(원)
    - 내부 : 농림부 및 소속·산하 기관
    - 타 부처 : 식약청, 환경부 등
    - 해외 : 미국 농무부, 코덱스 등
      - ※ 정보 발생처(원)는 연락처와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필요시 부서 단위까지 분류
  - 정보 수신처
    - 내부 : 농림부 및 소속·산하 기관
    - 타 부처 : 식약청, 환경부 등
    - 해외 : 미국 농무부, 코덱스 등
      - ※ 정보 수신처는 연락처와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필요시 부서 단위까지 분류
  - 정보 관리부서
  - 정보 형태
    - ※ 예 : 보고서, 뉴스 등
  - 정보 발생 주기
  - 정보 발생일 및 정보 등록일
  - 정보 소멸 시기

- 정보의 리스크 등급
  - ※ 예; 일반, 경고, 긴급 등으로 분류 가능
- 정보의 공개 등급
  - 공개 등급
  - 등급별 수신처(배포처)
- 정보의 대중매체 공개 여부
- 정보의 대중매체 공개범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의 활용 여부(예 : 정책설명회, 토론회 등)
- 안전(위험)정보 관리 조직(또는 담당자)은 “안전(위험)정보 분류”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처 또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분류,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축적된 정보는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함과 동시에 정기 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협의회) 개최 등으로 내부적 이해당사자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고려함.
- 또한 안전(위험)정보를 통한 효과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네트워크는 안전(위험)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환류 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며 이 네트워크에는 타 부처(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집단, 학계, 단체를 참여시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안전(위험)정보 네트워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정보 공유 기관 등 구분
    - 농림부 내부 정보 공유 외 타 기관 등과의 농식품 안전관리 및 정보교류에 있어서는 주 담당기관인 농림부(소비안전과)의 정보 네트워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수산부 등 식품안전관련 부처, 환경부, 국무총리실 및 청와대 등 기타 부처로 다시 세분됨. 민간기관은 관련업체,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언론기관, 일반 시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정보 공유 기관에 따른 정보 공유 시스템
    - 식약청등과의 관계는 주로 협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 기관들과의 사이에는 협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의/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기관 중 관련업체와 관련단체와의 사이에는 정보제공, 협의·환류, 적극적 참여 체계를 구축함.

- 언론기관과의 관계는 정보제공의 성격(제도소개 및 홍보 등)을 갖기 때문에 정보제공 체계의 구축 관리가 필요하며 일반시민과의 관계는 정보제공, 적극적 참여(농식품 안전관련 의견 수렴 등) 체계의 구축 및 관리.



<그림 40> 농림부 정보공유 네트워크

## 제2절.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작성

### 1.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 2005년 한국농업전문학교 용역으로 기 작성된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에 대하여 검토·수정·보완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추가 작성함.
-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의 내용구성은 아래와 같음.

위해 미생물
식중독균 : 리스테리아증 등 17종 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 등 3종 기생충 : 구충 등 9종 인수공통전염병 : 결핵 등 1종 곰팡이 : 곰팡이 등 1종 해충 등 : 쥐류 등 3종 기타 : 광우병 등 3종

위해 화학물질
자연독 : 버섯독 등 6종 곰팡이독 : 맥각독 등 7종 식품첨가물 : 아질산나트륨 등 7종 잔류농약 잔류 동물용의약품 : 니트로푸란 등 4종 중금속 : 납 등 5종 환경호르몬 : 다이옥신 등 5종 기타 유해 화학물질 : 가소제 등 9종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타	
방사선 조사 GMO	



## 2. 청소년 대상 농식품 등 안전 식생활 가이드 작성

- 식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에 대한 기본 지식, 이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책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공·교육 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평상시 안전한 식생활 수칙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스스로 자신의 식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농식품 등 안전 식생활 가이드를 작성함. 본 가이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식중독 예방 요령

    안전한 식품 섭취

안전한 냉장고 사용법

식품안전을 위한 가정에서의 'HACCP' 적용

감자튀김과 아크릴아마이드

트랜스지방산이 뭐지?

전자렌지 바르게 사용하기

식품 용기 및 포장재

테이크아웃 식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

농약의 종류 및 특성

농산물 중 잔류농약 제거법

GMO가 무엇인가요?

식품중의 유해 중금속

    납중독 예방

    생선과 조개에 들어있는 수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참 고 문 헌

### □ 인터넷 홈페이지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http://www.kfda.go.kr))
2.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3.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4.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5.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http://www.agros.go.kr>)
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http://www.nvrqs.go.kr>)
7.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8.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9. 미국 FDA 홈페이지 (<http://www.fda.gov>)
10.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 (<http://www.usda.gov>)
11. EU 홈페이지 ([http://ec.europa.eu/food/index\\_en.htm](http://ec.europa.eu/food/index_en.htm))
12. CODEX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index\\_en.jsp](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index_en.jsp))
13. 일본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jp>)

### □ 국내 문헌

14. 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 천석조, 2004
15. 식품안전시스템 이해, 니이야마요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2004
16. 전자정부에서의 안전관리 정보공유체계와 재난통신체계 실태조사, 이재은, 충북대학교, 2004
17. 사회적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접근방향, 정병대, 1996
18.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전달 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19.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박정규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 참고문헌

20. 커뮤니케이션이론: 연구방법과 이론의 활용, 세버린·텐카드 공저, 나남출판, 2005
21. 위해분석교육교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22.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수립, (주)엔디에스컨소시엄, 2005
23. 농산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위험정보교환 이론과 실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4
24. 식품안전정책 및 생산자·소비자 교육·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
25. 농산식품 안전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농촌진흥청, 2004
26. 식품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27. 식품공업, 한국식품공업협회, 2006. 7
28. 식품위해정보 정보화시스템의 보완과 활용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4
29. Risk Communication 활성화 방안(11회 식품안전열린포럼), 전상일, 2006
30.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상공회의소, 2006
31. 식품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 □ 국외 문헌

32. 환경 리스크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安井室, 환경과 측정기술, 2003
3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축으로 한 지방의 식품 안전 행정, 東京都, 2003
34. 지역 환경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 환경 리스크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村山武彦, 都市問題, 2002
35. 식품 안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關澤純, 環境技術, 2005
36. Risk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for Food Safety, Stanley, P.,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2001
37. 화학 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瀨田重敏, 環境管理, 2005
38. 화학 물질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Jun SEKIZAWA, 環境과 測定技術, 2003
39.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Takebayashi Toru, 臨床營養, 2002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40. 식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과제, 內閣府食品安全委員會事務局, 食品衛生研究, 2004
41. 식품 안전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소비자의 전문가에 대한 기대, Toshiko KANDA, 食品衛生研究, 2004
42. 식품 안전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일본 후생 노동성의 대응, Makoto HIROSE, 食品衛生研究, 2004
43. 식품 속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의의와 과제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林裕造, 食品衛生研究, 2005
44. Risk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Governing food, Powell, D. A., science, safety and trade, 2001
45.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Training, Eisenberg, N. 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and management, 2002
46. Development of Information Models to Evaluate, Measure, and Manage Risk Impacts of Government Policies on Agriculture, Whitelaw, R. A., European Feder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Agriculture, Food and the Environment; Perspectives of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n agriculture, food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control, 1999
47.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2005
48. 평성 16년도 식료품소비모니터 제4회 정기조사결과, 농림수산성, 2006
49.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2005

# 부 록



##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 절차서

### 1. 서문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공급의 각 단계에 있어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최근 국제적인 공통인식이 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행정에 있어 리스크 분석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국제식품규격을 작성하는 코덱스위원회(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는 “코덱스위원회에서 적용하는 리스크 분석의 작업원칙”을 채택하였음.
- 한편, 일본 국내에 있어서는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법률 제48호)에 의해 식품의 안전확보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식품공급행정의 각 단계에 있어 국제적 동향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과학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공급을 위해 ① 농림수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중 생산과정에 관계되는 리스크 관리조치, ② 농림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증진,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등에 따라 ① 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요인 발생방지, ②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공급행정 각 단계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관점에서 “생산현장부터 식탁까지”의 각 단계에 있어 리스크 관리조치가 중요함. 리스크 관리조치는 과학에 근거를 두는 것과 함께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되며 식품안전기본법 등 식품안전에 관련하는 국내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사항(2004년1월16일 각료결정)에 따라 강구하여야만 함.
- 이 표준절차서는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의 리스크 관리부국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자(이하 ‘리스크 관리자’라 함)가 리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스크 분석 절차법에 따라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저장 및 판매 등의 각 과정에서 식품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표준적인 작업 절차를 밝힌 것임. 단,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법정자문사항)에 해당하여 신청 등에 따라 이미 심의회의에 의해 리스크 관리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함. 본 절차서는 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개정함.

- 또한 식품안전에 관계되는 긴급사태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식품안전관계부성 긴급 시 대응 기본요강(2004년4월15일 관계부성협의), 농림수산성 식품안전 긴급 시 대응 기본지침(2004년2월27일) 및 후생노동성 건강위기관리기본지침(2001년3월9일 후생노동성발과제27호) 등에 따라 실시함.



## 2. 정의

○ 본 절차서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 **위해요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중의 물질 또는 식품의 상태. hazard라고 함.  
예를 들면, 유해한 미생물, 농약, 첨가물과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식품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인임.
- ▶ **리스크**                     식품중에 위해요인이 존재하는 결과로써 생기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정도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확률과 영향의 정도)
- ▶ **리스크 분석**               식품중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요인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말함.  
리스크 분석은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짐.
- ▶ **리스크 관리**               모든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리스크 저감을 위한 정책.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실행가능성, 비용 대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정책.조치를 결정, 실시,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
- ▶ **리스크 관리기관**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 본 절차서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이 이에 해당됨. 또한 국제적인 기구로는 코덱스위원회가 이에 상당함.
- ▶ **리스크 관리의 초기작업**   리스크 관리의 초기단계에 리스크 관리자가 실시하는 작업.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①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점 특정(特定)
  - ② 리스크 프로파일 문서 작성
  - ③ 위해요인의 우선도 분류
  - ④ 리스크 평가(assessment) 지침 결정
  - ⑤ 리스크 평가 의뢰
  - ⑥ 리스크 평가결과 고찰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 리스크 프로파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및 그 내용 설명.
- ▶ 적절한 보호수준      리스크 관리조치를 강구할 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건강보호 수준.
- ▶ 리스크 평가 지침      리스크 평가 과정에서 과학적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크 평가 의지결정 포인트에 대해 어떤 선택사항을 선택할지 및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화한 방침.
- ▶ 리스크 평가      식품중에 함유된 위해요인을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느 정도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 ▶ 리스크 평가기관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본 절차서에서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이에 해당함. 또한 국제적인 기구로는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 FAO/WHO합동 잔류농약전문가회의(JMPR), FAO/WHO합동 미생물학적 리스크평가 전문가회의(JEMRA)등이 이에 상당함.
- ▶ 무작용량      복수의 동물군을 사용하여 화학물질등의 위해요인 투여량을 달리하여 독성시험을 실시, 생물학적인 모든 영향이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최대 투여량. NOEL(No Observed Effect Level)이라고도 함.
- ▶ 무독성량      복수의 동물군을 사용하여 화학물질등의 위해요인의 투여량을 달리하여 독성시험을 실시, 독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최대 투여량.  
예를 들면 농약과 첨가물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물질에 관한 다양한 동물시험 성적을 평가하여 각 시험에 대해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대 투여량을 구함. 그들 가운데 가장 적은 양을 그 물질의 무독성량으로 함.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고 함.

- ▶ 벤치마크 투여량 (benchmark) 어떤 독성에 대하여 미리 결정한 확률의 작은 증가분(통상 1~10%)만큼 그 발생률을 상승시키는 투여량에서의 물질에 의한 폭로. 또는 미리 결정한 척도와 생물학적 영향 변화에 관련하는 투여량.
-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의 전 과정에서 '관계자'간의 정보 및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
- ▶ 관계자 위해요인의 식품중 존재와 리스크 관리조치에 의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 리스크 분석에 관련된 자, 학계 등. stakeholder라고도 함.

### 3. 일반원칙

#### 3.1 리스크관리 목적

- 식품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분석의 3가지 요소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는 식품안전행정의 큰 프레임워크 중에서 적용되는 것임. 리스크 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함. 그때 식품의 안전공급 확보에도 배려함.

#### 3.2 과학적인 근거

- 리스크 관리조치는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하여서는 아니됨. 단, 리스크가 크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가 최우선 목적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에서 과학적 근거 이외의 요소, 예를 들면 실행가능성과 비용등도 고려하여야만 함.
- 또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surveillance·monitoring계획·실시 및 결과 평가·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등에 따를 필요가 있음.

#### 3.3 리스크에 근거한 식품안전행정

##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식품안전행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크의 크기에 맞는 조치를 실시하여야만 함.

### 3.4 기록의 보존

- 리스크 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장래 참고하기 위하여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그 때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배려하여야만 함.

### 3.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기관은 리스크 분석 전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기관, 그 외에 리스크 관리기관 및 관계자 사이에 정보·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필요에 따라 그들 정보·의견을 리스크 관리정책에 반영시키는 동시에 리스크 분석의 투명성을 확보함.

### 3.6 관계기관과의 제휴

- 리스크 관리기관은 리스크 평가기관과 상호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도모함.
-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리스크 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리스크 관리기관 상호간에 제휴를 도모함.

### 3.7 SPS협정과 정합성

- 수출입에 영향을 주게 되는 리스크 관리조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WTO/SPS 협정에 적합할 필요가 있음.

### 3.8 일관성

- 리스크 관리자가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일반원칙에 준하지 않으면 안됨. 또한 위해요인 종류와 리스크 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지만 의사결정과정 등 모든 장면에서 일관성을 지켜야만 함.

## 4. 리스크 관리 초기작업

### 4.1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점 특정(特定)

#### 4.1.1 정보수집

- 리스크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식품사고 사례, 식품중 위해요인 함유실태 데이터, 리스크 평가와 독성에 관한 최신정보, 리스크 관리조치 실시상황 등)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수집함. 그 때 정보원을 명확하게 함. 또한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원 리스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개별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점이 밝혀지게 되는 경우, 그 외에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시, 재평가를 실시함.
- 또한 정보원에는 다음을 포함.
  - ① 농림수산물 관계 조직 (본성 각 국청, 지방농정국, 지방농정사무소, 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 동물의약품검사소, (독)농림수산물소비기술센터, (독)비사료검사소, (독)농약검사소, 시험연구독립행정법인 등)
  - ② 후생노동성 관계 조직 (본성 각 부국, 검역소, 지방후생국, 국립시험연구기관, (독)건강·영양연구소 등)
  - ③ 관계부성 (식품안전위원회 등)
  - ④ 국제기관, 해외 정부기관, 재외공관 등
  - ⑤ 학회, 연구회 등
  - ⑥ 지방공공단체
  - ⑦ 농림수산물·식품·생산자재의 생산·제조·유통업자·소비자단체 등

#### 4.1.2 정보 해석

리스크 관리자는 4.1.1에서 얻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를 특정하기 위하여 식품중에 위해요인이 존재하는 결과로써 발생하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 등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유의하여 해석함. 그때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 논문과 원 보고서 등의 1차 정보를 확인하도록 노력함.

- ①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 ② 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질 및 정도 (급성·만성, 치사성 유무, 영향의 불가역성, 건강회복에 요하는 기간, 후유증 유무 등)

- ③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상정되는 피해 범위 (피해자 수 등)

이들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 이후 절차에 따름.

#### 4.1.3 정보의 공유

리스크 관리자는 새로이 얻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고려하면서 성(省) 내부 및 관계 기관의 관계자 사이에서의 정보 공유를 도모함.

### 4.2 리스크 프로파일 문서 준비

#### 4.2.1 문헌조사

- 리스크 관리자는 4.1에서 수집한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에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4.2.2 참조) 국제기관에 의한 리스크 평가 결과, 전문가 총설, 관련 과학논문 등 보다 상세한 정보 수집에 노력함.

#### 4.2.2 리스크 프로파일 문서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4.1에서 특정한 문제에 관련되는 위해요인의 리스크 프로파일문서를 다음 항목을 검토하여 작성함.
  - ①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 및 그것이 함유된 식품의 특징(관련 정제, 생산방법, 품목, 생산량 등)
  - ②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이 주목 되게 된 경위
  - ③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과학적 특성과 분석법
  - ④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문제 (대사, 체내에서의 동태, 독성, 식품경유 섭취량, 그 외에 폭로)
  - ⑤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해외 및 국내 함유실태 조사결과
  - ⑥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이미 알고 있는 식품으로부터의 저감방법
  - ⑦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 ⑧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한 국제적 및 각국의 대처 상황(리스크 평가 상황 포함)

- ⑨ 가능하면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관한 리스크 평가기관에 상정질문사항
- ⑩ 현시점에서 부족한 데이터

#### 4.2.3 예비적인 리스크 추정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프로파일 문서를 작성한 위해요인에 대하여 리스크 프로파일 정보(급성독성, 만성독성, 섭취량 등)로부터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가능한 범위에서 추정함. 단, 이 시점에서 리스크의 추정은 잠정적인 것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4.2.4 부족한 데이터 수집

- 리스크 관리자는 4.2.3에서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당해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위해요인에 대하여 해외 및 국내 관련된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어떠한 데이터가 부족한가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 4.2.5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4.2.3에서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당해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큰 한편 건강영향 출현이 절박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5.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이후의 절차에 따름.

### 4.3 위해요인 최우선 분류

#### 4.3.1 최우선 리스트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작성한 위해요인의 리스크 프로파일문서를 기초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정도,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는 범위, 관계자의 관심 등에 기초하여 우선도에 따라 분류한 리스트(이하 ‘우선도 리스트’라 함)를 작성함.
- 우선도 리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① 4.2.3에서 실시한 예비적 리스크 추정결과

- ②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규모
- ③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 축적 정도
- ④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을 방치한 경우 경제적인 손실 크기
- ⑤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한 국제적 및 각국에서 실시되는 리스크 관리조치 상황
- ⑥ 관련된 식품이 일본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 유무와 영향 정도

#### 4.3.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자는 우선도 리스트 작성에 있어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의견·정보모집 등을 실시함. 또한 신속한 의견교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한 ‘관계자’를 중심 멤버로 하여 시기적절한 의견교환을 실시함. 그 때 공모에 의해 작성된 ‘관계자’ 리스트에서 과제마다 선정된 ‘관계자’의 참석을 검토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결과는 적절히 우선도 리스트에 반영함.

#### 4.3.3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프로파일 문서 및 우선도 리스트를 기초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할 때에 식품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와 함께 상정된 리스크 관리조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함. 그때 새로운 시험·연구와 실태조사의 실시, 리스크 저감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함. 또한 식품건강영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5.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 이후의 절차에 따름.

#### 4.4 리스크 평가 지침 검토·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가 계통적으로 결함이 없고 공정하여 투명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도록 보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리스크 평가기관과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리스크 평가 지침을 작성함. 리스크 평가기관에의 자문은 가능한 명확하여야만 함.

##### 4.4.1 리스크 관리 방향성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4.3 우선도 분류 결과,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따라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를 밝힘.

#### 4.4.2 필요한 데이터가 정비된 것 확인

- 리스크 관리자는 4.4.1에서의 검토결과를 고려하면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구하도록 노력함.

#### 4.4.3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할 때 리스크 평가 지침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4.4.1의 리스크 관리 방향성 검토 결과 및 4.4.2 데이터 정비 상태를 기초로 리스크 평가기관에 어떠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할지 사전에 리스크 평가 지침을 검토함. 리스크 평가 지침에서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의뢰와 자문을 명확하게 기술함.
- 예를 들면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이 있음.
  - ① 건강영향에 관한 무작용량/무독성량, 벤치마크 투여량
  - ② 감수성 높은 집단에의 건강영향
  - ③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인의 주요한 대사물의 독성
  - ④ 복수 리스크 관리 조치안별 리스크 저감효과

#### 4.4.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자는 4.4.3의 리스크 평가 지침 검토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 방법은 4.3.2에 준함.

#### 4.4.5 리스크 평가기관과의 의사소통

- 리스크 관리자는 식품건강영향평가가 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리스크 평가기관과 의사소통을 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목적, 대상, 상정된 리스크 관리조치안, 근거가 되는 데이터 내용 등에 대해서 공통 이해를 구함.
- 또한 복수의 리스크 관리기관이 관련되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식품건강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리스크 관리기관 상호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함.

#### 4.4.6 리스크 평가 지침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4.4.4의 ‘관계자’ 의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 지침에 반영함. 또한 4.4.5 리스크 평가기관과의 의사소통 결과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 지침에 반영함.

### 4.5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

#### 4.5.1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자문문서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위해 자문문서를 작성함. 리스크 관리자는 작성한 리스크 평가 지침을 자문문서에 명확하게 기술함.

#### 4.5.2 데이터 제출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자문 문서를 제출 할 때에 식품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도 가능한 제출함. 단, 개별 데이터의 제출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만 함.

#### 4.5.3 리스크 평가기관에의 설명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자문 문서를 제출한 후 식품건강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상정되는 리스크 평가조치안, 근거가 되는 데이터 내용 등을 리스크 평가기관에 대하여 설명함.

#### 4.5.4 필요에 따른 추가 데이터 제출

- 리스크 관리자는 자문에 대한 리스크 평가기관에서의 평가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음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데이터를 제출함. 또한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구하도록 노력함.

#### 4.5.5 식품건강영향평가 진척상황 파악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서의 식품건강영향평가 진척상황 파악에 노력

함.

#### 4.6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 고찰

##### 4.6.1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리스크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된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고찰함.
  - ① 평가결과가 자문문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가?
  - ② 그 결과를 받아 리스크 관리조치 검토에 넣는 것이 가능한가?

##### 4.6.2 필요에 따른 새로운 건강영향평가 의뢰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의 통지 후에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가 얻어지는 경우 등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가 리스크 관리조치의 검토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 정보를 감안하여 리스크 프로파일과 리스크 평가의뢰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다시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를 할지를 검토함.

### 5. 리스크 관리조치의 책정

#### 5.1 리스크 관리조치안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관리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적절한 수준을 고려하여 복수의 리스크 관리조치안(그 중 1가지는 현상유지로 함)을 작성하여 각각에 대해서 다음의 정보를 정리함.
  - ①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 예상되는 건강에의 악영향 정도 변화
  - ②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
  - ③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식품 안전에 관한 것 이외도 포함)에 관한 정보
  - ④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영향을 받는 범위 (건강영향, 경제적 영향, 소비자의 선택, 영향을 받는 집단의 정보 등)에 관한 정보

## 5.2 리스크 관리조치안 평가와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결정

### 5.2.1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평가

- 리스크 관리자는 5.1에서 검토한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평가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고려함. 또한 필요가 있다면 리스크 평가기관에 다시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를 검토함.
  - ①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실시에 따른 리스크 저감효과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 (예 : 식품중에 함유되는 어느 위해요인의 목표농도)
  - ②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실행가능성 (기술면, 재정면 등)
  - ③ 리스크와 편익 비교
  - ④ 그 외에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
- 또한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하게 되는 생산자, 식품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함.

### 5.2.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자는 5.2.1의 리스크 관리조치안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 그 방법에 대해서는 4.3.2에 준함.

### 5.2.3 리스크 관리조치의 결정

- 리스크 관리자는 5.2.1의 리스크 관리조치 평가결과 및 5.2.2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고려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그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리스크 관리조치를 결정함. 또한 그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SPS협정에 따른 통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 또한 통보 결과, 중요한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는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를 검토함 (5.1로 돌아감).

## 6. 리스크 관리조치 실시

### 6.1 법적 조치 및 가이드라인 등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5.2.3에서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와 생산자, 식품사업종사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생산, 제조, 가공, 유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실시규범, 위생기준, 목표치 등)의 작성 등을 검토함.

## 6.2 예산조치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5.2.3에서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산조치에 대하여 검토함.

## 6.3 다른 리스크 관리기관과의 제휴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5.2.3에서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다른 리스크 관리기관과 제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제휴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함.

## 7. 유효성 검증과 그 결과에 따른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

### 7.1 유효성 검증 방법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실시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함. 이 검증방법은 통계학에 근거한 것으로 간편하면서 저비용이어야 함.

### 7.2 정기적인 유효성 검증

- 리스크 관리자는 실시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위해요인 특성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조치마다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는 적절한 빈도를 검토함.

### 7.3 검증결과 취합정리와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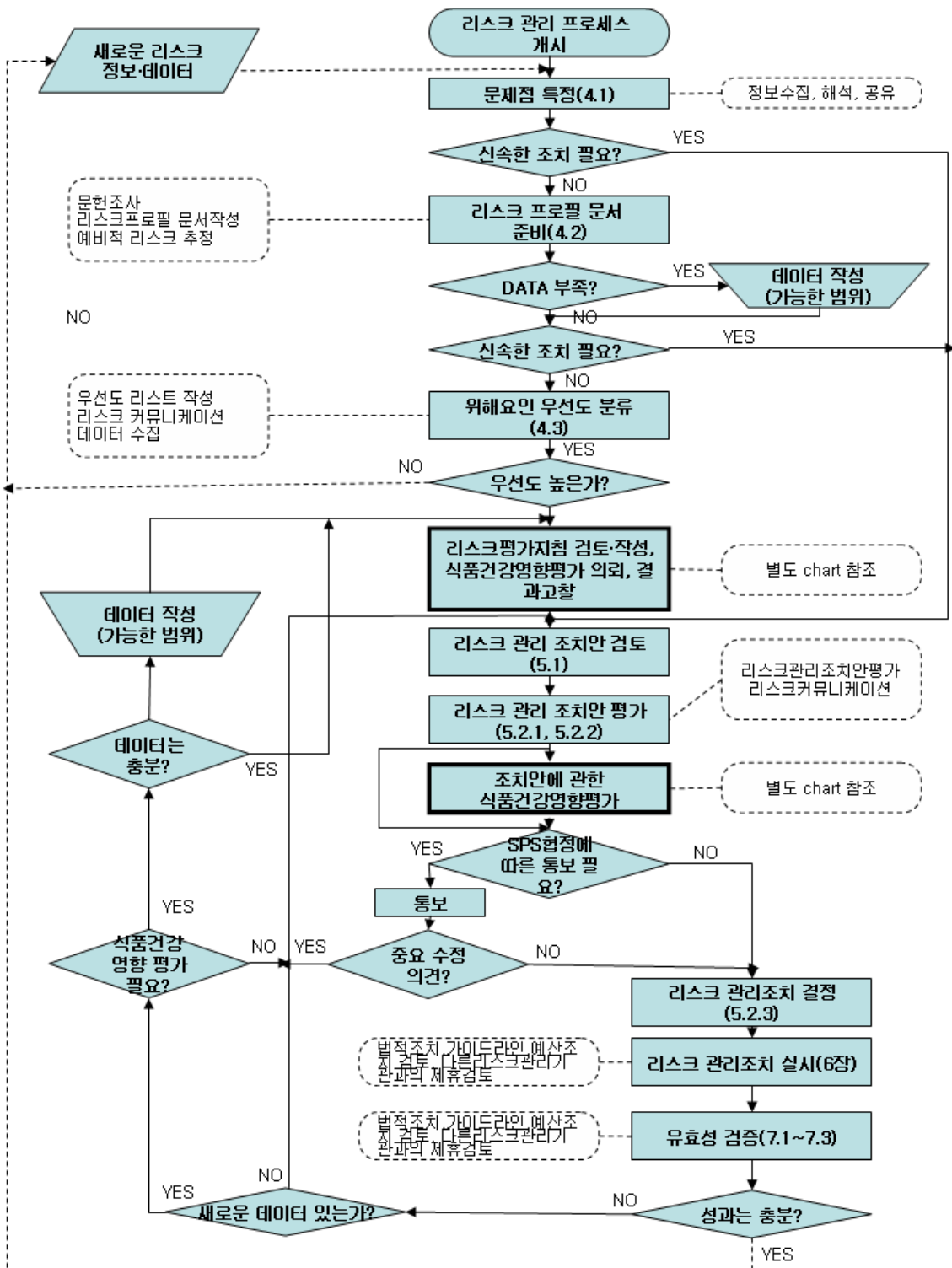
- 리스크 관리자는 7.2의 리스크 관리조치 검증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리스크 관리조치가 충분한지를 사전에 설정한 목표와 비교(예 : 저감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하여 고찰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공표함.

#### 7.4 필요에 따라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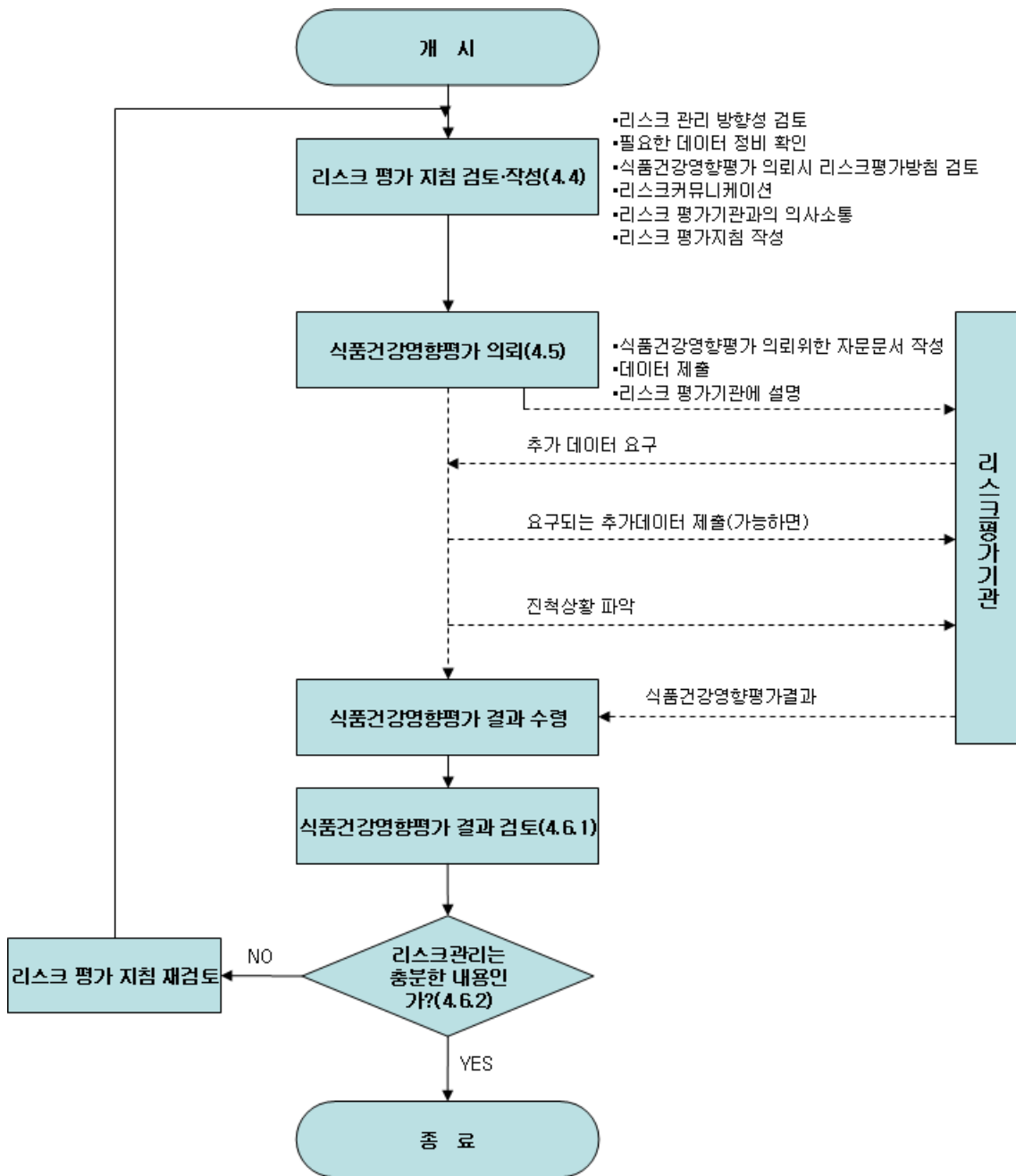
- 리스크 관리자는 7.3의 고찰 결과, 효과가 나타나는데 충분한 시간이 경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를 실시함.
  - ①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4.4 리스크 평가 지침의 검토·작성’을 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함. 그 때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얻도록 노력함.
  - ②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얻지 못하여 새로운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5.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을 함.
  
- 또한, 검증 결과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가 충분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얻어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4. 리스크 관리 초기작업’을 실시함.

#### 7.5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조치

- ‘4.1.2 정보의 분석’ 및 ‘4.2.5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 검토’에 있어서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조치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자는 데이터를 수집 축적함. 필요에 따라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 등을 행한 후에 새로운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검토·결정하여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함.



<그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절차 flow chart



<그림> 식품건강영향평가와 그 결과 해석 FLOW CHART